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516호 2020. 5. 2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1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2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4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4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0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14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7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1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5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25호선, 중로1-115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58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6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0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7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3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22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 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7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23호선,소로1-324호선)사업 실시 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8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51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188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190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0-81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검단1지구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406,679.0	-	406,679.0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6,679.0	-	406,679.0	100.0	
주 거 지 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9,003.9	-	79,003.9	19.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9,354.1	-	249,354.1	6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41,216.0	-	41,216.0	10.2	
준 주 거 지 역		25,105.0	-	25,105.0	6.2	
일 반 상 업 지 역		12,000.0	-	12,000.0	2.9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1	7,981	68,426.8	5	887	8,870.0	29	5,431	43,934.0	17	1,663	11,882.6	-	-	3,740.2
대로	2	162	422.0	-	-	-	-	-	-	2	162	379.0	-	-	43.0
중로	4	502	6,321.9	-	-	-	1	66	990.0	3	436	5,232.0	-	-	99.9
소로	45	7,317	61,682.9	5	887	8,870.0	28	5,365	42,944.0	12	1,065	6,271.6	-	-	3,597.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8	3.5 (25 ~ 28.5)	보조간 선도로	82 (8,510)	동측 지구계	광로 3-23호선	일반 도로		2000. 10.16	버스정차대 포함
기정	대로	3	61	3.5 (25 ~ 28.5)	〃	80 (4,420)	광로 3-23호선	대로 3-59호선	〃		1999. 6.17	버스정차대 포함
기정	중로	2	228	15	〃	66	대로 3-6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중로	3	79	12	〃	262	중로 2-228호선	마전동 899-4	〃		〃	
기정	중로	3	80	12	〃	36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1999. 6.17	
기정	중로	3	171	12	〃	138	대로 3-61호선	소로 1-1호선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62	중로 3-17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소로	1	2	10	〃	123	대로 3-5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1	3	10 ~ 13	〃	280	대로 3-58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5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일반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1	5	10	〃	167	소로 2-12호선	소로 2-9호선	〃		〃	
기정	소로	2	1	8	〃	230	대로 3-61호선	소로 2-4호선	〃		〃	
기정	소로	2	2	8	〃	156	중로 3-171호선	소로 2-1호선	〃		〃	
기정	소로	2	3	8	〃	151	소로 1-1호선	소로 2-23호선	〃		〃	
기정	소로	2	4	8	〃	311	중로 2-218호선	소로 1-1호선	〃		〃	

※ ()은 지구 외 사항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8	〃	320	소로 2-12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6	8	〃	18	중로 3-79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7	8	〃	38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9	8	〃	173	중로 3-79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0	8	〃	112	소로 2-9호선	소로 2-24호선	〃		〃	
기정	소로	2	11	8	〃	29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2	8	〃	37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3	8	〃	40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2	14	8	〃	121	대로 3-58호선	소로 1-2호선	〃		1995. 11.17	
기정	소로	2	15	8	〃	26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6	8	〃	25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7	8	〃	103	소로 1-2호선	소로 2-18호선	〃		〃	
기정	소로	2	18	8	〃	161	소로 2-16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9	8	〃	249	소로 2-1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20	8	〃	145	소로 2-21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2	21	8	〃	648	소로 1-2호선	마전동 1046	〃		〃	
기정	소로	2	22	8	〃	166	소로 1-3호선	소로 2-21호선	〃		〃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3	8	〃	157	소로 2-1호선	소로 2-3호선	〃		〃	
기정	소로	2	24	8	〃	149	소로 2-11호선	소로 2-10호선	〃		〃	
기정	소로	2	25	8	〃	290	소로 2-11호선	마전동 1032	〃		〃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6	소로 2-25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2	27	8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8	8	〃	250	소로 2-15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9	8	〃	118	중로 2-218호선	소로 2-1호선	〃		2000. 10.16	
기정	소로	3	9	6	〃	59	소로 2-12호선	소로 3-11호선	〃		1999. 6.17	
기정	소로	3	10	6	〃	113	소로 2-14호선	소로 3-9호선	〃		〃	
기정	소로	3	11	6	〃	173	소로 1-2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12	6	〃	37	소로 2-11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5	6	〃	138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6	6	〃	232	소로 1-4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7	6	〃	117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8	6	〃	38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9	6	〃	74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23	5	〃	28	소로 3-20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20	5	특수 도로	21	대로 3-58호선	소로 3-23	보행자 전용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3	22	4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08- 3	2,589.4	-	2,589.4	'99. 6.17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28-16	1,037.7	-	1,037.7	'99. 6.17	
	계		2개소		3,627.1	-	3,627.1		

다)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금곡공원	어린이공원	금곡동 727-8	3,753.7	-	3,753.7	'95.11.17	
기정	27	마전제1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7	4,606.2	-	4,606.2	'95.11.17	
기정	28	마전제6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29-1	2,662.5	-	2,662.5	'95.11.17	
기정	29	마전제5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6	4,048.0	-	4,048.0	'95.11.17	
	계		4개소		15,070.4	-	15,070.4		

라)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2-1	199.8	-	199.8	'99. 6.1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6-2	190.1	-	190.1	'99. 6.17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금곡동 722-1	409.0	-	409.0	'00.10.16	
	계		3개소		798.9	-	798.9		

마)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 교	초등학교	금곡동 721-1,721-2	12,930.2	-	12,930.2	'95.11.17	
기정	3	학 교	중 학 교	마전동 908-1,908-2	19,471.9	-	19,471.9	'95.11.17	
	계		2개소		32,402.1	-	32,402.1		

바)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4	공공청사	동사무소	마전동 927-4	3,572.1	-	3,572.1	2006.5.15	
기정	D-5	공공청사	보건소	금곡동 729-14, 729-17	-	증)331.0	331.0	2016.8.01	
	계		2개소		3,572.1	증)331.0	3,903.1		

사) 체육시설(변경있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마전동 905-6,-7	-	증)1,265.3	1,265.3		
	계		1개소		-	증)1,265.3	1,265.3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설 -면적 : 1,265.3㎡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실내형 생활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있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3	7,808.9	1-1	350.9	-	A-1	3	7,808.9	1-1	350.9	-
			1-2	350.8	-				1-2	350.8	-
			2	147.8	-				2	147.8	-
			3	143.4					3	143.4	
			4	253.2	-				4	253.2	-
			5	43.7	-				5	43.7	-
			6	274.9	-				6	274.9	-
			7-1	264.6	-				7-1	264.6	-
			7-2	529.0	-				7-2	529.0	-
			7-3-1	462.7	-				7-3-1	462.7	-
			7-3-2	518.3	-				7-3-2	518.3	-
			7-4-1	257.8	-				7-4-1	257.8	-
			7-4-2	257.8	-				7-4-2	257.8	-
			7-4-3	257.7	-				7-4-3	257.7	-
			8	360.0	-				8	360.0	-
			9-1	213.6	-				9-1	213.6	-
			9-2	285.0	-				9-2	285.0	-
			10-1	477.2	-				10-1	477.2	-
	10-2	477.0	-	10-2	477.0	-					
	11	247.4	-	11	247.4	-					
	12	153.3	-	12	153.3	-					
	13-1	248.9	-	13-1	248.9	-					
	13-2	248.8	-	13-2	248.8	-					
	14-1	328.3	-	14-1	328.3	-					
	14-2	328.4	-	14-2	328.4	-					
	14-3	328.4	-	14-3	328.4	-					
	4	2,047.6	1-1	268.0	-	4	2,047.6	1-1	268.0	-	
			1-2	267.9	-			1-2	267.9	-	
1-3			266.1	-	1-3			266.1	-		
2-1			220.5	-	2-1			220.5	-		
2-2			221.4	-	2-2			221.4	-		
2-3			211.2	-	2-3			211.2	-		
2-4			211.0	-	2-4			211.0	-		
3			381.5	-	3			381.5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5	5,752.0	1-1	348.1	-	A-1	5	5,752.0	1-1	348.1	-
			1-2	425.0	-				1-2	425.0	-
			1-3	191.1	-				1-3	191.1	-
			2-1-1	264.6	-				2-1-1	264.6	-
			2-1-2	264.5	-				2-1-2	264.5	-
			2-2	328.0	-				2-2	328.0	-
			2-3	227.4	-				2-3	227.4	-
			2-4	227.0	-				2-4	227.0	-
			4-1	197.2	-				4-1	197.2	-
			4-2	310.7	-				4-2	310.7	-
			5	283.8	-				5	283.8	-
			6-1	270.6	-				6-1	270.6	-
			6-2	270.5	-				6-2	270.5	-
			7-1	419.4	-				7-1	419.4	-
			7-2	391.0	-				7-2	391.0	-
			8	302.7	-				8	302.7	-
			9	279.2	-				9	279.2	-
			10	435.7	-				10	435.7	-
	11	315.5	-	11	315.5		-				
	10	2,562.1	1	72.4	-		10	2,562.1	1	72.4	-
			2-1	342.8	-				2-1	342.8	-
			2-2	465.4	-				2-2	465.4	-
			2-3	465.4	-				2-3	465.4	-
			3	407.3	-				3	407.3	-
			4-1	341.0	-				4-1	341.0	-
	11	2,985.4	1-1-1	396.6	-		11	2,985.4	1-1-1	396.6	-
			1-1-2	397.1	-				1-1-2	397.1	-
			1-2	397.8	-				1-2	397.8	-
			1-3	330.0	-				1-3	330.0	-
			2	232.3	-				2	232.3	-
			3	382.7	-				3	382.7	-
			4-1	324.6	-				4-1	324.6	-
			4-2	282.6	-				4-2	282.6	-
	12	3,186.2	1-1	232.8	-		12	1,920.9	1-1	232.8	-
			1-2	259.1	-				1-2	259.1	-
			1-3	437.1	-				1-3	437.1	-
			2	470.4	-				2	470.4	-
			3	257.9	-				3	257.9	-
			4	51.1	-				4	51.1	-
			5	177.1	-				5	177.1	-
			6	540.2	-				-	-	-
			7	725.1	-				-	-	-
8			35.4	-	8	35.4			-		
13	2,265.9	1-1	342.8	-	13	2,265.9	1-1	342.8	-		
		1-2	348.1	-			1-2	348.1	-		
		2	272.3	-			2	272.3	-		
		3-1	287.2	-			3-1	287.2	-		
		3-2	287.6	-			3-2	287.6	-		
		4	304.7	-			4	304.7	-		
		5	205.7	-			5	205.7	-		
6	217.5	-	6	217.5	-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기 정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변 경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15	1,887.3	1	437.7	-	A-1	15	1,887.3	1	437.7	-
			2-1	281.6	-				2-1	281.6	-
			2-2	281.6	-				2-2	281.6	-
			3-1	518.9	-				3-1	518.9	-
			3-2	326.3	-				3-2	326.3	-
			4	41.2	-				4	41.2	-
	16	1,238.8	2	1,100.0	-		16	1,238.8	2	1,100.0	-
			4	138.8	-				4	138.8	-
	17	1,900.3	1	367.0	-		17	1,900.3	1	367.0	-
			2	231.6	-				2	231.6	-
			3	200.0	-				3	200.0	-
			4	374.2	-				4	374.2	-
			5-1	222.1	-				5-1	222.1	-
			5-2	273.1	-				5-2	273.1	-
	18	3,602.4	1-1	279.7	-		18	3,602.4	1-1	279.7	-
			1-2	279.7	-				1-2	279.7	-
			1-3	279.8	-				1-3	279.8	-
			1-4	325.4	-				1-4	325.4	-
			1-5	311.1	-				1-5	311.1	-
			1-6	294.6	-				1-6	294.6	-
			1-7	294.5	-				1-7	294.5	-
			1-8	278.3	-				1-8	278.3	-
			2-1	303.8	-				2-1	303.8	-
			2-2	303.9	-				2-2	303.9	-
			2-3-1	275.6	-				2-3-1	275.6	-
			2-3-2	376.0	-				2-3-2	376.0	-
	20	5,022.6	1	268.1	-		20	5,022.6	1	268.1	-
			2	1,522.4	-				2	1,522.4	-
			3	264.1	-				3	264.1	-
			4-1	286.1	-				4-1	286.1	-
			4-2	222.8	-				4-2	222.8	-
			6-1	249.0	-				6-1	249.0	-
			6-2	263.2	-				6-2	263.2	-
			7	244.5	-				7	244.5	-
			8	496.1	-				8	496.1	-
			9	312.4	-				9	312.4	-
10-1			366.7	-	10-1	366.7			-		
10-2			196.3	-	10-2	196.3			-		
		11	330.9	-			11	330.9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21	3,997.4	1-1	258.7	-	A-1	21	3,997.4	1-1	258.7	-
			1-2	258.6	-				1-2	258.6	-
			1-3	258.7	-				1-3	258.7	-
			2-1	236.1	-				2-1	236.1	-
			2-2	236.0	-				2-2	236.0	-
			2-3	237.0	-				2-3	237.0	-
			3-1	271.7	-				3-1	271.7	-
			3-2	272.0	-				3-2	272.0	-
			4	223.1	-				4	223.1	-
			5-1	271.6	-				5-1	271.6	-
			5-2	271.5	-				5-2	271.5	-
			5-3	271.7	-				5-3	271.7	-
			6-1	371.5	-				6-1	371.5	-
			6-2	330.5	-				6-2	330.5	-
	7	228.7	-	7	228.7	-					
	22	2,136.2	1	500.9	-	A-1	22	2,136.2	1	500.9	-
			2	231.2	-				2	231.2	-
			3	1018.9	-				3	1018.9	-
			4	248.7	-				4	248.7	-
			5	136.5	-				5	136.5	-
	23	3,152.3	1-1	329.4	-	A-1	23	3,152.3	1-1	329.4	-
			1-2	329.4	-				1-2	329.4	-
			1-3	289.3	-				1-3	289.3	-
			2	220.5	-				2	220.5	-
			3	317.4	-				3	317.4	-
			4	238.3	-				4	238.3	-
			5	176.2	-				5	176.2	-
			6	121.0	-				6	121.0	-
			7	187.9	-				7	187.9	-
			8-1	268.3	-				8-1	268.3	-
8-2			277.6	-	8-2				277.6	-	
8-3	397.0	-	8-3	397.0	-						

2) 단독주택용지(A-2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2	1,318.5	3	660.9	-
			4	657.6	-
	6	3,959.5	1	165.3	-
			3	109.9	-
			4	711.4	-
			5	878.4	-
			6	1,085.0	-
			7-1	336.4	-
			7-2	336.4	-
			7-3	336.7	-
			28	1,797.4	3
	4	566.9			-
	5	835.4			-
	30	3,532.2	1	154.4	-
			2	772.5	-
			3	194.1	-
			4	195.2	-
			5	314.9	-
			7	151.4	-
			8	147.6	-
			9	236.5	-
			10	174.1	-
			11	157.5	-
			12	251.8	-
			13	181.2	-
			14	280.8	-
	16	320.2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37	6,004.3	1	242.8	-
			2	182.6	-
			3	357.1	-
			4	298.8	-
			5	260.2	-
			6	269.0	-
			7	255.2	-
			8	1,100.2	-
			9	238.0	-
			10	328.5	-
			11	321.3	-
			12	390.4	-
			13	267.9	-
			14	273.3	-
			15	257.3	-
			16	280.1	-
			17	300.6	-
			18	381.0	-
	38	4,011.5	1-1	346.7	
			1-2	409.4	
			2	247.2	
			3	356.3	
			4	242.7	
			5	488.4	
			6	272.3	
			7	237.4	
			8	358.5	
			9	637.6	
			10	155.8	
	11	259.2			
	39	3,079.3	1	1,222.0	-
			2	231.9	-
			3	477.4	-
			4	516.9	-
			5	313.6	-
			6	210.3	-
			7	107.2	-
	40	1,806.6	1	287.6	
			2	183.0	
			3	232.7	
			4	238.6	
			5-1	601.3	
			5-2	263.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41	3,211.7	1	201.4	-
			2	197.3	-
			3	188.6	-
			4	258.8	-
			5	155.5	-
			6	210.6	-
			6-1	176.7	-
			6-2	235.5	-
			6-3	199.5	-
			6-4	199.4	-
			7	298.3	-
			9	312.2	-
			10	207.2	-
			11	267.2	-
	12	103.5	-		
	43	689.7	6	689.7	-
	44	4,072.2	1	208.6	-
			2	179.3	-
			3	136.4	-
			4	134.4	-
			5	195.1	-
			13	214.3	-
			14	183.7	-
			16	244.2	-
			17	168.0	-
			18	184.9	-
			19	147.5	-
			20	150.1	-
			21-1-1	263.8	-
			21-1-2	336.7	-
			21-2	327.4	-
	22	659.6	-		
	23	338.2	-		

3) 공동주택용지(B-1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B-1	36	2,201.5	1	440.0	-
			2	284.2	
			3	414.9	
			4	501.0	
			7	437.9	
			8	123.5	
	44	2,532.1	24	139.4	-
			36	209.1	-
			37	238.0	-
			38	594.7	-
			39	350.3	-
			40	837.1	-
			43	163.5	-

4)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필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B-2	7	16,488.4	727-1	5,096.4	공동건축지정
			727-2	3,648.4	
			727-3	1,110.3	
			727-4	3,067.9	
			727-5	682.3	
			727-6	1,852.9	
			727-7	338.0	
			727-9	692.2	
	27	9,331.0	1	9,331.0	
	28	14,026.4	1	10,260.0	
			2	3,766.4	
	29	12,115.6	1	12,115.6	
	42	4,802.8	1	4,802.8	
	43	7,726.0	1	3,998.0	
			2	591.9	
			3	3,136.1	
	49	883.0	3	883.0	
	50	4,538.6	1	4,101.0	
			3	437.6	

5) 공동주택용지(B-3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B-3	44	11,483.1	6	1,348.4	-
			44-1	705.7	-
			44-2	1,096.7	-
			45	470.6	-
			46	1,270.2	-
			47-1	1,818.9	-
			47-2	401.9	-
			25-1	4,370.7	-
46	4,488.2	2	4,488.2	-	

6) 공동주택용지(B-4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B-4	2	11,434.5	2	11,434.5	-
	5	1,723.2	3	1,723.2	-
	6	12,017.2	2	12,017.2	-
	43	11,011.6	5	10,543.8	-
			7	467.8	-
	49	5,213.5	1	4,636.2	-
			4	577.3	-

7)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B-5	8	31,049.3	1	30,718.3	-

8) 근린생활시설용지(C-1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C-1	24	4,991.9	1-1	363.8	-
			1-2	670.1	-
			1-3	337.0	-
			2-1	607.6	-
			3	505.7	-
			4	1,218.9	-
			6	286.3	-
			7	551.6	-
			8	450.9	-
	26	3,060.4	1	143.6	-
			2	247.6	-
			3	356.3	-
			4	181.7	-
			5	204.4	-
			6	242.6	-
			7	170.2	-
			8	702.5	-
			10	476.0	-
			11	188.1	-
			12	147.4	-
			31	1,754.3	1
	2	231.3			-
	3	320.7			-
	4	164.1			-
	5	175.4			-
	6	118.9			-
	7	338.8			-
	32	2,469.9	1	178.1	-
			2	225.0	-
			3	230.1	-
			4	293.9	-
			5	166.4	-
			7	136.9	-
			8	301.3	-
			9	91.6	-
			10	228.5	-
			11	321.7	-
			12	110.2	-
			13	186.2	-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C-1	45	3,272.3	1	3,272.3	-
	47	3,289.4	1	831.3	
			2	982.8	
			3-1	359.4	
			3-2	349.7	
			3-3	766.2	
	48	2,152.9	1	835.5	
			2	501.2	
			3	261.6	
			4	296.8	
			5	257.8	

9) 상업용지(C-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C-2	33	4,013.6	1	3,046.9	-
			2	234.6	-
			3	143.6	-
			4	141.2	-
			5	160.0	-
			6	287.3	-
	34	2,191.0	1	276.0	-
			2	378.5	-
			3	181.8	-
			4	204.3	-
			5	330.1	-
			6	132.4	-
			7	369.4	-
			8	171.0	-
			9	147.5	-
	35	4,509.9	1	136.4	-
			2	403.3	-
			3	469.3	-
			4	359.4	-
			5	276.4	-
			6	288.1	-
			7	2,225.8	-
			8	351.2	-

10) 종교집회장용지(D-2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2	16	2,508.6	1	1,683.5	-
			3	825.1	-
	23	572.9	9	572.9	-

11) 아동관련시설용지(D-3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D-3	20	1,202.9	5	1,202.9	-
	36	697.3	5	399.5	-
			6	297.8	-

12) 공공업무시설용지(D-4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가 구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4	43	3,572.1	4	3,572.1	-
D-5	8	331.0	30	331.0	-

13) 주차장용지(E-1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가 구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E-1	25	2,589.4	3	2,589.4	-
	44	1,037.7	48	1,037.7	-

14) 체육시설(D-6용도)(변경있음)

■ 체육시설(D-6)의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	-	-	-	-	-	D-6	12	1,265.3	6	1,265.3	-

■ 체육시설(D-6)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획지계획 변경 - 체육시설 신설	· 기존 단독주택용지 12-6, -7(마전동 905-6, -7번지)에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12-6, -7 ⇒ 12-6)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있음)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1-1~5,8),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2) 단독주택용지(A-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단독주택 용지)	2(3~4), 6(1,3~7-3), 28(3~5), 30(1~16), 37(1~2,4~18), 38(1-1~11), 39(1~7), 40(1~5-2), 41(1~6,6-1~4,7,9-12), 43(6), 44(1~5,13~14, 16~20,21-1-1~2, 22~23)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25m이상 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 도로: 1m	

3) 공동주택용지(B-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용 지)	36(1~4, 7, 8) 44(24, 36~40, 43)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다세대: 240% 연립: 150% 이하	
		높 이	○ 다세대 및 연립주택: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 평형: 20평, 8가구 / 주차: 8대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4)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2 (공동주택용지)	7(1~3, 4-1~2, 5~6, 8),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용도	허용용도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5) 공동주택용지(B-3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3 (공동주택용지)	44(6, 25-1,44-1~2, 45~46, 47-1~2), 46(2)	용도	허용용도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10층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6) 공동주택용지(B-4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4 (공동주택용지)	2(2), 5(3), 6(2), 43(5,7), 49(1,4)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30%이하	
		높 이	○ 15층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7)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5 (공동주택용지)	8(1)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E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23%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15층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8) 근린생활시설용지(C-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24, 26, 31, 32, 45, 47(3-1~3), 48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5m 미만도로 350% 이하 ○ 15m 이상도로 500% 이하	
		높 이	○ 15m 미만도로변 5층 이하 ○ 15m 이상도로변 7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준주거용지	
		배 치	○ 별표2의 준주거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준주거용지	

9) 상업용지(C-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상업용지)	33, 34, 35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m 미만도로변 500% 이하 ○ 25m 이상도로변 800% 이하	
		높 이	○ 25m 미만도로변 7층 이하 ○ 25m 이상도로변 12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상업시설용지	
		배 치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10) 학교용지 (D-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학교용지)	1,25(1,2)	용 도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 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11) 종교시설용지 (D-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종교용지)	16(1,3),23(9) 종교집회장 (D-2 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12) 아동관련시설용지 (D-3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아동관련시설 용지)	20(5), 36(5~6) 아동관련시설 (D-3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13) 공공청사용지 (D-4, D-5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4) 공공청사 (D-4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1m			
D-5 (공공청사)	8(30) 공공청사 (D-5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5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 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 도로: 1m			

14) 주차장시설용지 (E-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주차장)	25(3), 44(48) 주차장 (E-1 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높 이	○ 5층(20m) 이하	
		형 태	○ 별표3의 주차장	
		배 치	○ 별표2의 주차장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주차장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은 각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주) ()는 획지번호

15) 체육시설용지(D-6용도)(변경있음)

■ 체육시설용지(D-6)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6 (체육시설 용지)	12(6)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6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6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별표2의 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용지(D-6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체육시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6(마전동 905-6, -7번지)에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신설 ※당초, 단독주택용지(A1용도)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건축선 계획 반영

바.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있음)

■ 기 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주거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허용용도 : 단독주택 1층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제2종 일반주거	단독주택용지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및 인천시건축조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공동주택용지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다세대 (240), 연립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 및 연립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50	5층이하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00	10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	200	15층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30	15층이하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주상복합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60	150 (15m 미만 도로)	5층이하 (15m미만 도로)	
			350 (15m 이상 도로)	7층이하 (15m이상 도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일반 상업	상업 용지	C-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용도복합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영업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 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500 (25m미만도로)	7층이하 (20m미만도로)
							800 (25m이상도로)	12층이하 (25m이상도로)
제2종 일반 주거	학교	D-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50	5층이하
	종교 시설	D-2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제1종 일반 주거	아동 관련 시설	D-3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제2종 일반 주거	공공 청사	D-4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이하
	공공 청사	D-5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주차 장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단독·공동주택(기숙사제외)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유희골프연습장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300	5층(20m)이하

■ 변경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주거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층허용용도 1층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제2종 일반주거	단독주택용지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및 인천시건축조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 1·2층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공동주택용지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다세대 (240), 연립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 및 연립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50	5층이하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00	10층이하
		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	200	15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	ㄷ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30	15층이하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주상복합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60	150 (15m 미만 도로)	5층이하 (15m미만 도로)	
					350 (15m 이상 도로)	7층이하 (15m이상 도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일반 상업	상업 용지	C-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용도복합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 업종 (건축자재,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 시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500 (25m미만도로)	7층이하 (20m미만도로)
							800 (25m이상도로)	12층이하 (25m이상도로)
제2종 일반 주거	학교	D-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50	5층이하
	종교 시설	D-2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제1종 일반 주거	아동 관련 시설	D-3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공공 청사	D-4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이하
	공공 청사	D-5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제2종 일반 주거	주차장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 -단독·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300	5층(20m) 이하
제1종 일반 주거	체육 시설	D-6	○ 체육시설 중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별표 2] 건축물 배치 분류표(변경있음)

■ 기 정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동향배치가 불가피한 동서간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 하게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 부여 ○ 주로 블록내부에 배치하여 판상형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공간에 변화유도 ○ 남/동향을 전면으로 하여 배치하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현식을 도입하여 변화부여 ○ 중층판상형 아파트의 배치를 통하여 경관변화의 요소로서 활용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에 접한 부분은 소음방지를 위해 건물을 10m이상 이격하며, 이격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해 식재를 조성함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2m, 이면도로 1m
상업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 2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이상도로변: 3m, 15m미만도로변: 1m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동향배치가 불가피한 동서간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 하게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 부여 ○ 주로 블록내부에 배치하여 판상형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공간에 변화유도 ○ 남/동향을 전면으로 하여 배치하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현식을 도입하여 변화부여 ○ 중층판상형 아파트의 배치를 통하여 경관변화의 요소로서 활용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에 접한 부분은 소음방지를 위해 건물을 10m이상 이격하며, 이격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해 식재를 조성함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2m, 이면도로 1m
상업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 2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이상도로변: 3m, 15m미만도로변: 1m
체육시설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1m

[별표 3] 건축물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건축물의 형태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지의 모든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 창출 - 지붕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돌출색체에 의한 주거지경관의 악화 방지 -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과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5m 이하로 규제 - 담장과 대문 형태는 투시형을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외벽: 건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개별 구릉지 등의 시각적 개방감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아파트의 지붕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앞 신규 공동주택지의 지붕형태는 기와잇기형으로 시공하여 민간인의 옥상진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함 - 경사지붕(박공지붕)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 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상업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단사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형태 유도 - 간선도로에 접하는 필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하여 간선도로의 경관향상 및 연속성 강조 -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 투시형을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과의 교류 유도 ○ 옥외광고물 및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광고물의 난립에 의한 가로경관의 질적 수준저하를 방지하고 광고물을 Design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부문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수목·보도)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경관 제고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주차용도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변 가로망과 일관된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하여 건축물 입지로 인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로변 및 공지 등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별표 4] 대지내 공지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내 공지
전 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을 나누어서 적용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공 개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계없이 대지면적 일정비율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건축법상의 최소규모, 조성방식 등이 결정되어 있음) • 주요간선가로변, 주요결절부 및 대형필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결절부의 보행 활성화 유도 • 공개공지는 위치 및 최소면적 지정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유도 •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선형), 피로티 구조,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여 확보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
쌈 지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 대지에서 건축법 제32조, 시행령 27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경부분과 건축법 67조에 의한 공개공지를 공공이 24시간 이용가능한 가로변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 으로 조성할 것을 대지면적에 따라 규제 또는 권장 •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연접한 공지로 조성) • 조성방식을 공개공지 조성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때에는 25㎡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지면적 500㎡이상의 대지는 대지면적의 5%이상 쌈지공원으로 조성토록 유도 • 공동주택부지는 간선변, 간선가각부 및 버스베이부근에 45㎡이하의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유도

구 분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내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요접근로 및 주요시설 주변 및 세장비가 긴 가구내에 원거리 이동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최소 4m이상) • 벽면한계선에 의한 설치로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활용하여 영세필지의 부담저감 • 필지간의 단차 및 경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통로개설 유도 • 공공보행통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등 보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구조물은 설치금지 •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 조경면적으로 인정
보행자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조성 • 기존 차도의 폐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확보 (최소 4m이상)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 독 주 택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옥내주차장 보다는 옥외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주차장의 타용도로의 전용을 방지, 이때 옥외주차장은 담장밖에 설치하도록 유도 • 인접대지와외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복합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법정주차면수에 1면을 추가적으로 확보 유도
공 동 주 택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교차점간 거리가 35m 미만일 경우 +자형 교차가되도록 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상 업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 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는 각 15m 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 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 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 기존 차도의 폐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확보 (최소 4m이상)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폭 15m이상, 보도폭 3m이상이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시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2역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 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쌈지공원)을 조성한다. •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가 로 장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상화보완적 가로장치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내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조 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 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 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알맞게 유도·조정한다. • 가로등주를 현재의 Single-arm Bracket에서 부분적으로 Double-arm Bracket으로 개선하여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현재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광원은 보강한다.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는 일반포장구간과 특별포장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간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문양, 새, 꽃 등의 각종 패턴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 -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간격인 8m를 기본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춘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차공존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패턴 및 질감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 -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공간을 상호간 대비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단위 줄눈이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 공간으로의 사용을 유도한다. - 이동성이 강한 지역의 포장패턴은 울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도 시 안 내 표 지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 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 시 안 내 표 지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심볼, 로고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중랑구 전체의 주요 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 보행자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구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경 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가로로서의 상징성과 흡인성을 고려하여 규모있는 건축물 입지 유도 - 도로변으로 공개공지 확보 및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개방감과 정연한 가로분위기 연출 - 노면을 통한 건물의 조망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시각 및 운행 유도 - 대로 전면의 공개공지는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된 중심 녹지축을 형성하여 지구 중심으로서의 상징과 시각축 형성 - 건축물 전면의 색채, 형태, 재료를 가능한 동일계통 권장 • 보행자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이격 및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채로 조성하여 개방감과 심미적 경관 조성 -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자연경관 요소를 도입하여 시각적 쾌적함 도모 • 시가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내 동남APT에 의한 경관훼손 완화를 위하여 주변 공동주택용지를 고층으로 계획하되 15층이하로 규제하여 원만한 스카이라인 유도 - 지구내 중심인 검단사거리 주변의 건축물에 대하여 랜드마크적인 형태유도로 인지성 및 상징성 유도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획일화 방지를 위하여 블록별로 특성화된 외관형성 유도 • 자연녹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건물군(대부분 APT)의 경우 건축물 주변으로 조경공간을 설치하여 위압감을 완화하고 건물사이 개방공간은 낮은 관목의 식재와 낮은 단지시설물(가로등, 담장, 표지판 등) 설치 유도

[별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경관 계획
경 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주거단지 - 1중주거단지의 경우 층수를 2층 이하로 계획하고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시각적인 다채로움 조성 - 수목의 식재 및 보존으로 수립에 쌓인 전원적인 경관 형성 - 지형을 감안한 건축물 배치로 자연스러운 경관 유도
건축물 경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면 처리 • 외벽면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변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대지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 이때 담, 문, 지하층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면부 입면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입면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 외벽면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에 면한 필지의 건축물의 경우 개구부의 모양, 크기, 비례에 대하여 인접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평띠형, 격자형을 사용 한다.

구 분	경관 계획
건축물 경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에 투시형 벽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에도 건축물 전면을 투사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간판, 옥상 및 기타구조물의 처리 •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따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외벽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외관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간선도로변에 면하는 대지에 5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될 건물은 가로외관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 녹지 경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 공원은 수목분포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 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이용권 및 유치거리 등을 고려하여 4개소를 분산 배치 • 공원은 이용자의 일상적인 이용, 놀이, 운동, 휴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에 기여하여, 주민의 다양한 정서수용을 위한 경관조성 • 대상지내 각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의 연속성을 부여 • 식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수종은 풍토에 적합한 수종 • 수형이 아름답고 향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수종 • 수종의 수급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구 분	경관 계획
색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 • 건물옥상부에 녹지공간 활용 및 가구수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지에 30%이상의 녹지공간 조성(다세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용지 • 간선변 고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 사업지구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진입부의 이미지와 친근감이 있도록 계획 • 내부 저층·중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단독주택용지 • 원색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며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이 가능하도록 색채계획 -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별표 7] 기타사항(변경없음)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군부대 협의 등의 협의사항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건축법령과 인천시 건축조례, 서구 관련조례에 따른다(관련법 개정 및 변경시 이를 따른다)
- (1) 기존 건축물 및 획지분할에 따른 특례
- 환지계획에 의해 발생한 최소규모 미달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최소규모 미달필지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획지에 한하여 대지분할을 할경우 1개의 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 면적에 만족하고 잔여 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의 규정에서 허용한 건축물 용도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단, 1종일반지역은 제외한다)
- (2) 관련기관 협의사항 반영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지구단위계획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군부대 협의사항
 - 적용지역 : 7 Block
 - 건물방향 : 건축물 측면이 군부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
 - 건물높이 : 현 검단군인APT높이(5층) 이내로 제한
 - 건물지붕형태 : 기와잇기형으로 시공
 - 건물옥상출입 불가
 - 적용지역 : 8·9 Block
 - 건물높이 : 기존 검단군인APT(5층)에서 하나APT(15층)까지의 지붕끝선을 잇는 사선 범위내에서 건축허용. 단, 사격구역 범위 내 건축될 건물은 모두 적용 요망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대로변 공동주택의 경우 10m이상의 건축선을 이격하고 이격부지내 높이3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상단부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며 도로변에서 노출된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치, 이격되는 지점의 도로변으로는 수목식재를 계획함
 - 대로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선을 3m이격하며, 방음벽 5m 이상 높이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포장은 수원함양을 위하여 가능한한 투수성재료로 포장하여야 함

- 공동주택단지는 건물옥상부에 녹지공간 활용 및 가구수 20호이상의 공동주택지에 30%이상의 녹지공간 조성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구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20 - 82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II. 위 치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2,093,078.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 (2006.12.1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로(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3	17,854	393,018.4	10	6,115	180,769.7	31	11,079	190,170.7	2	660	22,078.0
광로	1	487	19,955.8	-	-	-	-	-	-	1	487	19,955.8
대로	8	5,292	180,391.5	4	3,101	113,094.9	4	2,191	67,296.6	-	-	-
중로	30	11,508	187,906.1	5	2,901	66,541.8	25	8,434	119,242.1	1	173	2,122.2
소로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3	40 (40~46)	주간선 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06-158 (’06.9.11.)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7	35 (35~41)	보조간선 도로	3,100 (574)	석남동 광1-14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1386 (1988.9.23.)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4	30 (30~36)	보조간선 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인고2005-13 (’05.1.25.)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6	35 (35~41)	주간선 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건고 54 (70.2.9.)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7	35 (35~40)	주간선 도로	2,307 (554)	원창동395	원창동 광3-3	일반도로	-	인고158 (’06.9.11.)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29	30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7)	대2-32	대1-14 (하수처리장)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37	30	국지도로	1,085 (764)	대1-7	원창동 395-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40	3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울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대1-7	대2-29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5	20	국지도로	550	대1-14	대2-37	일반도로	-	인고2014-50 (2014.03.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대1-16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442	대1-1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197	중2-2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900	15	국지도로	266	대로1-14	중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중로	2	901	15	집산도로	225	대로1-16	중로2-2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중로	2	902	15	국지도로	172	중로2-1	중로2-90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중로	2	910	15	국지도로	455	대2-29	중2-920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기정	중로	2	918	15	국지도로	350	원창동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2014-169 (2014.07.28.)	
기정	중로	2	919	15	국지도로	353	원창동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2014-169 (2014.07.28.)	
기정	중로	2	920	15 (15~20)	국지도로	232	중1-1	석남동 342-13	일반도로	-	인고2016-123 (2016.06.07.)	
기정	중로	2	928	15	국지도로	600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2	929	15	국지도로	283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2	930	15	국지도로	272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2	931	15	국지도로	124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2	932	15	국지도로	130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2	933	15	국지도로	124	중2-5	중2-2	일반도로	-	인고2017-240 (2017.10.16.)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73	중2-7	중2-3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13	광2-4	중2-2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91	중로2-901	중로2-90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82	중로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1	중로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②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원창동 381-40번지	5,642.0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2	주차장	원창동 381-64번지	1,300.0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3	주차장	원창동 495번지	782.5	인고 2016-6 (2016.01.18.)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① 공원(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제1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486-1번지	14,210.8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2	제2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485-5번지	76,368.2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3	제3공원	소공원	원창동 495-1번지	469.5	인고 2016-6 (2016.01.18.)	

②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석남동 660-2번지	22,954.6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487-2번지	1,210.3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494번지	9,741.0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중복결정(659㎡)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486-7번지 일원	16,911.9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중복결정(7,727㎡)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485-4번지 일원	16,110.0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중복결정(1,857㎡)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491번지 일원	1,922.1	인고 2016-6 (2016.01.18.)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59-4번지	6,905.5	인고 2016-290 (2016.11.2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59-5번지	3,833.7	인고 2016-290 (2016.11.21.)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①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변경없음)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196-7번지 일원	436,326 (25,428)	1984.8.14	()구역내 면적, 녹지 3,4,5와 중복결정(10,243㎡)
기정	-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379번지 일원	141,246.7	인고 제95-6호 (95.01.12.)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39번지	3,443.1	인고 2012-5 (2012.01.16.)	-
기정	2	공공청사	소방서	원창동 381-123번지	3,445.9	인고 2018-79 (2018.4.9.)	
기정	3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25번지	1,756.3	인고 2018-79 (2018.4.9.)	

②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원창동 381-124번지	1,755.2	인고 2018-79 (2018.4.9.)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있음)

가) 공업용지(변경있음)

[변경 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계			48획지 37필지	895,388.3 (802,055.2)		
I	I -1(1)	61,684.4	1	-	17,293.4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21,772.2	
			3	-	22,619.9	
	I -1(2)	23,041.1	1	-	11,393.9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1,647.2	
	I -1(3)	54,590.5	1	-	12,502.4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2,502.0	
			3	-	15,034.0	
			4	-	14,552.1	
	I -1(4)	52,822.2	1	-	12,581.7	
			2	-	12,581.3	
			3	-	14,073.9	
			4	-	13,585.3	
	I -1(5)	50,386.8	1	-	12,502.1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2,501.7	
			3	-	12,932.4	
			4	-	12,450.6	
	I -1(6)	24,267.5	1	-	12,005.9	
			2	-	12,261.6	
	I -1(7)	25,187.6	1	-	12,466.6	
			2	-	12,721.0	
	I -2(1)	51,290.4	1	-	14,048.0	
			2	-	16,891.1	
			3	-	20,351.3	
	I -2(2)	93,933.2	1	-	18,017.2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8,936.8	
			3	-	8,899.6	
4			-	18,520.8		
5			-	13,200.5		
6			-	12,937.4		
I -2(3)	41,735.0	1	-	14,383.5		
		2	-	13,620.7		
		3	-	13,730.8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적(㎡)	면적(㎡)	
I	I -3	21,846.8	1	3,360.8	-	
			2	3,360.8	-	
			3	3,360.8	-	
			4	3,387.2	-	
			5	3,387.2	-	
			6	4,990.0	-	
	I -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 -5	27,133.1	1-1	3,388.85	-	-
			1-2	3,388.85	-	
			2-1	3,399.05	-	-
			2-2	3,399.05	-	
			3	6,770.3	-	-
			4-1	3,393.50	-	-
			4-2	3,393.50		
	I -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3) 필지 분할 가능
	I -8	63,091.6	1-1	29,862.8	-	-
			1-2	33,228.8	-	-
	I -9	32,935.3	1	7,602.7	-	주3) 획지 분할 가능 (북향복재단지)
			2	17,317.8	-	
			3	8,014.8	-	
	I -10	22,995.3	1	22,995.3	-	
	I -11	19,564.7	1	12,479.8	-	
			2	1,814.3	-	
			3	1,600.0	-	
			4	2,070.6	-	
5			1,600.0	-		
I -12	12,437.5	1	7,923.4	-		
		2	4,514.1	-		
I -13	5,405.7	1	5,405.7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지	필지	비고
				면적(㎡)	면적(㎡)	
I	I-14(1)	56,460.3	1	-	56,460.3	주1,2) 필지 분할 가능
	I-14(2)	27,798.4	2	-	27,798.4	
	I-15	15,961.0	1	1,438.0	-	-
			2	1,416.0	-	-
			3	1,395.0	-	-
			4	1,373.0	-	-
			5	1,352.0	-	-
			6	1,331.0	-	-
			7	1,309.0	-	-
			8	1,288.0	-	-
			9	1,266.0	-	-
			10	1,245.0	-	-
			11	1,223.0	-	-
			12	1,325.0	-	-

-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규모 (신설)2,400㎡(주1) 이상

- 주1) I-7-2 필지는 분할조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I-1(1)~I(7), I-2(1)~2(3), II-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3)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목재단지 단서조항

구분	최소 획지규모	비고
공업용지 (I-9, I-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 요건 : 최소획지규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주3) 획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 I -1(1)~1(7), I -2(1)~2(3), I -7-2, I -14(1)~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 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 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구모	최소필지구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필 지	비 고
				면 적(㎡)	
계			22 필지	104,833.7	
II	II-1	16,595.7	1	16,59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
	II-2	16,323.8	1	4,16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
			2	4,142.4	
			3	1,082.8	
			4	6,932.9	
	II-3	71,914.2	1	6,100.1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
			2	6,292.1	
			3	9,531.8	
			4	9,559.3	
			5	3,379.2	
			6	1,534.7	
			7	91.3	
			8	1,515.0	
			9	2,850.8	
			10	4,457.0	
			11	456.0	
			12	3,046.0	
			13	6,612.0	
			14	2.7	
15	8,079.9				
16	3,506.2				
17	4,900.1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

■ II-1~3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분	분할 요건	기타
필지형태	단변과 장변의 비(1:1~3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 분할 가능 (단, 소규모 필지를 3,500㎡ 이상으로 합병 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소규모(3,500㎡이하) 필지: 원창동 388-6, 388-8, 388-9, 395-9, 395-1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필 지	비 고
				면 적(㎡)	
계			12 필지	197,336.3	
계	II-4	99,497	1	16,563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16,626	
			3	16,579	
			4	16,584	
			5	16,572	
			6	16,573	
II	II-5	97,839.3	1	16,633.5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16,521.5	
			3	16,568.8	
			4	15,976.7	
			5	16,029.1	
			6	16,109.7	

- 주1) II-4~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

■ II-4~5가구의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 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변경 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계			36획지 70필지	895,388.3 (802,055.2)		
I	I -1(1)	61,684.4	1	-	17,293.4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21,772.2	
			3	-	22,619.9	
	I -1(2)	23,041.1	1	-	11,393.9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1,647.2	
	I -1(3)	54,590.5	1	-	12,502.4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2,502.0	
			3	-	15,034.0	
			4	-	14,552.1	
	I -1(4)	52,822.2	1	-	12,581.7	
			2	-	12,581.3	
			3	-	14,073.9	
			4	-	13,585.3	
	I -1(5)	50,386.8	1	-	12,502.1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12,501.7	
			3	-	12,932.4	
			4	-	12,450.6	
	I -1(6)	24,267.5	1	-	12,005.9	
			2	-	12,261.6	
	I -1(7)	25,187.6	1	-	12,466.6	
			2	-	12,721.0	
	I -2(1)	51,290.4	1	-	14,048.0	
			2	-	16,891.1	
			3	-	20,351.3	
	I -2(2)	93,933.2	1	-	18,017.2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	8,936.8	
			3	-	8,899.6	
4			-	18,520.8		
5			-	13,200.5		
6			-	12,937.4		
7			-	13,420.9		
I -2(3)	41,735.0	1	-	14,383.5		
		2	-	13,620.7		
		3	-	13,730.8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적(㎡)	면적(㎡)	
I	I -3	21,846.8	1	3,360.8	-	-
			2	3,360.8	-	-
			3	3,360.8	-	-
			4	3,387.2	-	-
			5	3,387.2	-	-
			6	4,990.0	-	-
	I -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 -5	27,133.1	1-1	3,388.85	-	-
			1-2	3,388.85	-	-
			2-1	3,399.05	-	-
			2-2	3,399.05	-	-
			3	6,770.3	-	-
			4-1	3,393.50	-	-
			4-2	3,393.50	-	-
	I -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2) 필지 분할 가능
	I -8	63,091.6	1-1	29,862.8	-	-
			1-2	33,228.8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적(m ²)	면적(m ²)	
I	I -9	32,935.3	원창동 488	-	4,024.6	주2,3) 필지 분할 가능 (북향목재 단지)
			원창동 488-1	-	2,529.5	
			원창동 488-2	-	3,214.5	
			원창동 488-3	-	3,578.1	
			원창동 488-4	-	2,529.3	
			원창동 488-5	-	2,529.3	
			원창동 488-6	-	2,529.3	
			원창동 488-7	-	2,400.1	
			원창동 488-8	-	2,400.1	
			원창동 488-9	-	2,400.2	
			원창동 488-10	-	2,400.2	
			원창동 488-11	-	2,400.1	
	I -10	22,995.3	원창동 489	-	2,532.5	
			원창동 489-2	-	13,223.2	
			원창동 489-3	-	2,611.6	
			원창동 489-4	-	4,628.0	
	I -11	19,564.7	원창동 498	-	2,937.6	
			원창동 498-1	-	1,814.3	
			원창동 498-2	-	1,600.0	
			원창동 498-3	-	2,070.6	
			원창동 498-4	-	1,600.0	
			원창동 498-5	-	1,651.2	
			원창동 498-6	-	1,651.2	
			원창동 498-7	-	1,651.1	
			원창동 498-8	-	1,651.1	
			원창동 498-9	-	2,937.6	
	I -12	12,437.5	원창동 497	-	1,983.5	
			원창동 497-1	-	2,313.9	
			원창동 497-2	-	1,978.2	
			원창동 497-3	-	1,978.3	
			원창동 497-4	-	1,983.4	
			원창동 497-5	-	2,200.2	
	I -13	5,405.7	원창동 496	-	5,405.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지	필지	비고
				면적(㎡)	면적(㎡)	
I	I-14(1)	56,460.3	1	-	56,460.3	주1,2) 필지 분할 가능
	I-14(2)	27,798.4	2	-	27,798.4	
	I-15	15,961.0	1	1,438.0	-	-
			2	1,416.0	-	-
			3	1,395.0	-	-
			4	1,373.0	-	-
			5	1,352.0	-	-
			6	1,331.0	-	-
			7	1,309.0	-	-
			8	1,288.0	-	-
			9	1,266.0	-	-
			10	1,245.0	-	-
			11	1,223.0	-	-
			12	1,325.0	-	-

- 주1) I-1(1)~1(7), I-2(1)~2(3), I-7-2, I-14(1), I-14(2)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3) I-9~ I-13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

■ I-9~13 (북향목재단지) 필지 분할 요건

구분	분할 요건	기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I-9, I-10: 2,400㎡ ^{주1)} 이상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 I -1(1)~1(7), I -2(1)~2(3), I -7-2, I -14(1)~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 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위 치	필 지	비 고
				면 적(m ²)	
계			22 필지	104,833.7	
II	II-1	16,595.7	1	16,59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II-2	16,323.8	1	4,16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4,142.4	
			3	1,082.8	
			4	6,932.9	
	II-3	71,914.2	1	6,100.1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6,292.1	
			3	9,531.8	
			4	9,559.3	
			5	3,379.2	
			6	1,534.7	
			7	91.3	
			8	1,515.0	
			9	2,850.8	
			10	4,457.0	
			11	456.0	
			12	3,046.0	
13			6,612.0		
14	2.7				
15	8,079.9				
16	3,506.2				
17	4,900.1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

■ II-1~3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분	분할 요건	기타
필지형태	단변과 장변의 비(1:1~3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 분할 가능 (단, 소규모 필지를 3,500㎡ 이상으로 합병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소규모(3,500㎡이하) 필지: 원창동 388-6, 388-9, 395-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필지	비고
				면적(㎡)	
계			12 필지	197,336.3	
II	II-4	99,497	1	16,563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16,626	
			3	16,579	
			4	16,584	
			5	16,572	
			6	16,573	
	II-5	97,839.3	1	16,633.5	주1,2) 필지 분할 가능
			2	16,521.5	
			3	16,568.8	
			4	15,976.7	
			5	16,029.1	
			6	16,109.7	

- 주1) II-4~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

■ II-4~5가구의 필지분할 요건

구분	분할요건	기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계			54획지	147,500.2	
III	III-1	8,390.7	1	2,028.9	
			2	2,151.2	
			3	2,048.9	
			4	2,161.7	
	III-2	11,907.5	1	1,485.9	
			2	1,551.6	
			3	1,726.4	
			4	1,786.0	
			5	1,232.6	
			6	1,255.0	
			7	1,419.0	
			8	1,451.0	
	III-3	13,843.6	1	1,819.5	
			2	1,817.1	
			3	2,099.5	
			4	2,027.1	
			5	1,462.5	
			6	1,353.9	
			7	1,713.0	
			8	1,551.0	
	III-4	13,991.0	1	1,380.0	
			2	1,379.0	
			3	1,404.0	
			4	1,391.0	
			5	1,417.0	
			6	1,391.0	
			7	1,430.0	
			8	1,391.0	
			9	1,426.0	
			10	1,382.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III	III-5	13,281.0	1	1,501.0	
			2	1,471.0	
			3	1,525.0	
			4	1,455.0	
			5	1,525.0	
			6	1,406.0	
			7	1,525.0	
			8	1,357.0	
			9	1,516.0	
	III-6	8,534.0	1	2,000.0	
			2	2,077.0	
			3	2,196.0	
			4	2,261.0	
	III-7	67,030.5	1	10,964.0	
			2	11,738.0	
			3	15,367.5	
			5	7,171.0	
			6	7,121.0	
			7	6,956.0	
			8	7,713.0	
	III-8	10,521.9	1	2,556.2	
			2	2,769.0	
			3	2,541.0	
			4	2,655.7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계			2획지	1,837	
IV	IV-1	1,837.0	1	1,137.0	
			2	700.0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필 지	비 고
				면 적(㎡)	
계			4필지	10,400.5	-
V	V-1	10,400.5	원창동 381-39번지	3,443.1	
			원창동 381-123번지	3,445.9	
			원창동 381-125번지	1,756.3	
			원창동 381-124번지	1,755.2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계			3 획지	7,724.5	-
V	V-2	5,642.0	1	5,642.0	-
	V-3	1,300.0	1	1,300.0	-
	V-5	782.5	1	782.5	-

□ 유통 및 공급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계			1획지	98,340.0	-
V	V-4	98,340.0	1	98,340.0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141,246.7㎡) 결정면적과 획지 면적차이는 송유관로(42,906.7㎡) 면적에 의한 차이임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35획지	7,943.8	
VII	VII-1	1,123.9	1	218.8	
			2	223.7	
			3	226.1	
			4	225.6	
			5	229.7	
	VII-2	2,289.2	1	229.9	
			2	230.0	
			3	230.1	
			4	230.3	
			5	225.7	
			6	222.8	
			7	230.3	
			8	230.3	
			9	230.0	
			10	229.8	
	VII-3	2,273.8	1	228.9	
			2	228.9	
			3	228.7	
			4	228.7	
			5	223.5	
			6	220.5	
			7	228.5	
			8	228.7	
			9	228.6	
			10	228.8	
	VII-4	2,256.9	1	227.1	
			2	227.0	
			3	227.0	
			4	227.0	
			5	221.6	
			6	218.7	
			7	227.0	
			8	227.2	
			9	227.1	
			10	227.2	

※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동일한 전면도로에 인접한 필지에 한하여 허용함.

원칙적으로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합병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분할만 허용함.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I - 1(1)~1(7), 2(1) ~ 2(3)	용 도	허 용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3m(대1-7, 대2-40, 대2-116, 중1-4, 중2-928, 중2-929, 중2-930, 중2-931, 중2-932호변)	
	I -3, 4, 5	용 도	허 용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3m	
	I -7, 8	용 도	허 용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대로1-7호선변 : 6m ○ 도시계획도로변 : 3m(I-7-2만 적용) ○ I-8블럭 : 3m, 북측변 20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I-15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3m		
I	I-9~13 (목재단지)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주1)}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내 : 공공조경 3m ○ 교차로가각부 : 공개공지 5m 		

- 주1) 공장, 창고용도에 한하여 70%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I - 14(1), 14(2)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도시계획도로변 : 3m(단, 대2-29호선변 : 6m)		
II	II - 1, 2, 3, 4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창고시설 ○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포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자동차영업소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건축한계선	○ 2m, 광로3-3호변 : 5m		
	II-5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창고시설 ○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2m, 광로3-3호변 : 5m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II	III- 1~6, 8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3m, 대로1-7호변: 6m ○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3m, 남북측 5m, R=12.5m	
		III- 7	용 도	허 용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중봉로변 : 공공조경 6m, 건축한계선 15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대로1-7호변 : 건축한계선 6m ○ 중로2-1호변 : 건축한계선 3m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V	IV-1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건축한계선	○ 3m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	V-1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형 태	○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	V-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형 태	○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북측 청라경계부 건축한계선 : 20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	V-2, 3, 5 (주차장)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차장(단,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형 태	○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VII	VII-1~4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 획지당 1세대에 한하여 지하층 및 1층 외에 입지하는 경우만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한계선	○ 도시계획도로변 : 전면공지 1m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북향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한함)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북향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한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버스정차대,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구간은 차량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 지원시설용지 내 차량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각각모서리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북향 목재 단지 도시 개발 구역	<p>전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한다. (차량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 전면공지는 연결한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p>공개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공개공지 조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폭은 5m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p>공공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 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공공조경의 조성기준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기준에 준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공공조경으로 조성된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전부 산입한다. ○ 공공조경 내 차량진출입구는 필지별로 2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량진출입구 설치 구간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Ⅲ.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4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원당동 · 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480.9	-	948,480.9	100.0	
주거지역	859,759.8	-	859,759.8	9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607.6	-	286,607.6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9,904.7	-	189,904.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247.5	-	383,247.5	40.0	
일반상업지역	88,721.1	-	88,721.1	10.0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3	23	40	주간선 도로	1,030 (총 9,095)	동측 지구계	광로 3-25	일반 도로		'98. 6.12.	
소계	3	1개노선		-	1,030	-	-	-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28 (총 1,366)	광로 3-24	중로 1-120	일반 도로		'98. 6.12.	
중로	1	120	20	보조간선 도로	1,330 (총 4,290)	대로 2-61	대로 3-58	일반 도로		'98. 6.12.	버스 베이 설치
중로	1	127	20	집산도로	488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중로	1	128	20	집산도로	499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소계	1	4개노선		-	2,545	-	-	-			
중로	2	173	17	집산도로	462	중로 1-120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74	17	집산도로	545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 도로		99. 6.23.	
소계	2	2개노선		-	1,007	-	-	-			
중로	3	107	12	집산도로	779	광로3-23	중로1-120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08	12	집산도로	322	중로 3-107	소로 3-38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483	광로 3-23	중로2-174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191	중로 1-120	소로 2-41	일반 도로		99. 6.23.	
소계	3	4개노선		-	1,775	-	-	-			
소로	1	1	10	국지도로	604	중로 1-116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2	10	국지도로	421	중로 1-127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3	10	국지도로	313	광로 3-23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4	10	국지도로	357	중로 3-107	중로 3-108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3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6	중로 3-107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7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20	중로 3-10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중로 3-108	소로 1-6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9	10	국지도로	89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13	중로 3-10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17	중로 1-128	중로 1-12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12	10	국지도로	55	중로 1-128	소로 1-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12개노선			2,865	-	-				
소로	2	1	8	국지도로	158	중로 1-120	소로 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	8	국지도로	353	소로 1-1	소로 2-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중로1-120	소로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	8	국지도로	58	소로 1-1	(원당동 656-2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5	8	국지도로	37	소로 2-1	소로 3-8	일반 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6	8	국지도로	49	소로 2-1	소로 3-9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7	8	국지도로	225	중로 2-173	- (원당동 79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8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9	8	국지도로	9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0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0	소로 2-11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3	8	국지도로	289	소로 1-4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4	8	국지도로	74	소로 2-13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5	8	국지도로	41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6	8	국지도로	120	소로 2-17	소로 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7	8	국지도로	315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8	8	국지도로	609	소로 2-18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9	8	국지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0	8	국지도로	35	중로 3-107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1	8	국지도로	14	중로 3-107	동측 지구계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2	8	국지도로	190	중로 3-107	소로 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3	8	국지도로	56	중로 3-107	소로 2-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4	8	국지도로	49	소로 2-22	소로 3-3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5	8	국지도로	118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6	8	국지도로	82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7	8	국지도로	328	소로 1-8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8	8	국지도로	55	소로 2-27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9	8	국지도로	37	중로 3-107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30	8	국지도로	8	중로 3-107	- (원당동 778-11)	일반 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31	8	국지도로	24	중로 3-107	- (원당동 77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2	8	국지도로	9	중로 3-107	- (원당동 56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3	8	국지도로	216	중로 3-107	소로 2-3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4	8	국지도로	4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5	8	국지도로	33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6	8	국지도로	368	중로 3-111	중로 3-1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7	8	국지도로	85	소로 2-38	소로 2-3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8	8	국지도로	103	소로 2-36	소로 2-3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9	8	국지도로	179	광로 3-23	소로 2-4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0	8	국지도로	134	중로 1-120	소로 2-39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1	8	국지도로	291	소로 2-47	- (당하동 984-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2	8	국지도로	195	중로 3-112	소로 2-4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3	8	국지도로	26	소로 2-42	남측 지구계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4	8	국지도로	90	소로 2-45	소로 2-4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5	8	국지도로	204	소로 2-41	- (당하동 32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6	8	국지도로	161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7	8	국지도로	174	소로 2-45	소로 2-4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8	8	국지도로	463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99. 6.23.	
소계	2	48개노선		-	6,924	-	-	-			
소로	3	1	6	국지도로	147	소로 2-1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2	6	국지도로	37	소로 1-1	소로 3-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3	6	국지도로	99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4	6	국지도로	268	소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5	4	국지도로	72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6	6	국지도로	46	소로 1-1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7	3	특수도로	13	중로 1-116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8	3	특수도로	11	중로 1-116	소로 2-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9	3	특수도로	16	중로 1-116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0	3	특수도로	368	소로 1-1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1	3	특수도로	15	소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2	3	특수도로	18	중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3	3	특수도로	29	중로 1-120	소로 3-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4	3	특수도로	40	중로 1-120	소로 3-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5	3	특수도로	153	소로 1-1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6	3	특수도로	216	소로 1-1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7	3	특수도로	303	소로 2-7	소로 3-1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8	3	특수도로	36	소로 2-13	소로2-1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9	3	특수도로	30	광로 3-23	소로 2-1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0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1	3	특수도로	7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2	3	특수도로	155	중로 1-127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3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4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5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6	2	특수도로	295	소로 2-21	북측 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7	3	특수도로	40	소로 2-18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8	3	특수도로	36	소로 3-27	소로 3-2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9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0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1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32	3	특수도로	16	중로 3-107	소로 2-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3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4	3	특수도로	33	소로 1-5	소로 2-25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5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8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6	3	특수도로	43	중로 3-107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7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8	3	특수도로	580	중로 3-107	중로 3-10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중로 3-107	- (원당동 56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중로 1-120	- (원당동 568-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1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2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3	3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2-3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4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3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5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당하동 13-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6	4	특수도로	201	중로 1-128	중로 3-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7	3	특수도로	229	소로 2-35	소로 2-3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8	3	특수도로	18	소로 2-36	소로 3-4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9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0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1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2	4	특수도로	229	중로 1-128	중로 2-17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3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39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4	3	특수도로	170	소로 2-40	소로 2-4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5	3	특수도로	57	중로 3-112	소로 2-4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6	3	특수도로	33	소로 2-48	소로 2-4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57	3	특수도로	34	소로 2-48	소로 2-4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8	4	특수도로	55	중로 1-127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계	3	58개노선		-	4,637	-	-	-			

주)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4,228.6	-	4,228.6	-	
기정	2	주차장	원당동 825-8	1,409.1	-	1,409.1	'99.06.23.	
기정	3	주차장	당하동 1029-1	1,411.3	-	1,411.3	'99.06.23.	
기정	4	주차장	당하동 1030-6	1,408.2	-	1,408.2	'99.06.23.	

나)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44,932.5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11-2	18,321.3	ˆ 99.6.23.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24-11	10,226.9	ˆ 99.6.2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49	11,114.7	ˆ 01.8.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원당동 805-3	2,949.5	ˆ 99.6.23.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41	2,320.1	ˆ 00.6.26.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13,933.1	-	
소계	-	-	-	-	9,162.4	-	완충녹지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11-9	388.2	ˆ 99.6.23.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2	418.0	ˆ 99.6.23.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3	1,147.2	ˆ 99.6.23.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4	106.0	ˆ 99.6.2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19-1	913.6	ˆ 99.6.2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1	928.5	ˆ 99.6.23.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2	838.9	ˆ 99.6.2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1	374.8	ˆ 99.6.23.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0	801.1	ˆ 99.6.23.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9	942.4	ˆ 99.6.23.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5-3	170.3	ˆ 99.6.2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8	539.0	ˆ 99.6.23.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3-6	675.4	ˆ 99.6.23.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5	919.0	ˆ 99.6.23.	
소계	-	-	-	-	4,770.7	-	경관녹지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795-1	114.7	ˆ 99.6.23.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01	1,196.9	ˆ 99.6.23.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40-6	986.6	ˆ 99.6.23.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13	298.1	ˆ 99.6.23.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6	107.7	ˆ 99.6.23.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6-2	207.1	ˆ 00.6.26.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2	479.7	ˆ 10.10.4.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1	98.2	ˆ 10.10.4.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3-5	523.0	ˆ 10.10.4.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7-1	111.3	ˆ 10.10.4.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5	59.2	ˆ 10.10.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6	143.0	10.10.4.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61-1	142.0	10.10.4.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10-14	303.2	10.10.4.	

③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1,436.9	-	
기정	1	공공공지	원당동 873	884.7	10.10.4.	
기정	2	공공공지	원당동 836-4	379.1	10.10.4.	
기정	3	공공공지	원당동 849-1	119.8	10.10.4.	
기정	4	공공공지	원당동 857-2	53.3	10.10.4.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	57,715.8	-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원당동 852-3	12,053.0	99.6.23.	
기정	2	학교	중학교	원당동 852-2	11,419.5	99.6.23.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원당동 809	12,215.1	99.6.23.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당하동 1022	11,247.3	99.6.23.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당하동 1038-1	10,780.9	00.6.26.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	5,368.6	-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원당동 853-1	1,990.1	99.6.23.	
기정	2	공공청사	우체국	원당동 823-2	1,264.9	99.6.23.	
기정	3	공공청사	파출소	원당동 854-1	970.3	99.6.23.	
기정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원당동 854-2	1,143.3	99.6.23.	

③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체육시설	복합체육관	원당동 825-1	1,409.5	2019.12.30.	

라) 방재시설

①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하천	하천	원당동 851-4	5,150.3	'99.6.23.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단독주택용지(A-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1-1	615.7	1	387.5		A-1	1-1	615.7	1	387.5	
			2	228.2					2	228.2	
	2	893.4	1	316.4		A-1	2	893.4	1	316.4	
			2-1	270.2					2-1	270.2	
			2-2	306.8					2-2	306.8	
	3	2,215.2	1	369.2		A-1	3	2,215.2	1	369.2	
			1-2	369.2					1-2	369.2	
			1-3	369.2					1-3	369.2	
			1-4	369.2					1-4	369.2	
			1-5	369.2					1-5	369.2	
			1-6	369.2					1-6	369.2	
	4	2,079.9	1-1	440	-	A-1	4	2,079.9	1-1	440	-
			1-2	465.4	-				1-2	465.4	-
			2-1	273.0	-				2-1	273.0	-
			2-2	315.0	-				2-2	315.0	-
			2-3	586.5	-				2-3	586.5	-
	9	5,198.9	1	485.9	-	A-1	9	5,198.9	1	485.9	-
			2	1,262.8	-				2	1,262.8	-
			3-1	298.1	-				3-1	298.1	-
			3-2	299.5	-				3-2	299.5	-
			3-3	298.2	-				3-3	298.2	-
			3-4	299.7	-				3-4	299.7	-
			4-1	293.0	-				4-1	293.0	-
			4-2	275.0	-				4-2	275.0	-
			4-3	337.0	-				4-3	337.0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4	319.0	-				4-4	319.0	-
			4-5	276.1	-				4-5	276.1	-
			4-6	275.0	-				4-6	275.0	-
			5	479.6	-				5	479.6	-
	10	4,312.3	1-1	922.8	-		10	4,312.3	1-1	922.8	-
			1-2	664.0	-				1-2	664.0	-
			2-1	340.5	-				2-1	340.5	-
			2-2	340.5	-				2-2	340.5	-
			3	381.4	-				3	381.4	-
			4-1	275.7	-				4-1	275.7	-
			4-2	310.9	-				4-2	310.9	-
			5	677.0	-				5	677.0	-
	11	2,521.8	1	1,629.3	-		11	2,521.8	1	1,629.3	-
			2	447.8	-				2	447.8	-
			3	444.7	-				3	444.7	-
	14	2,138.9	1	605.3	-		14	2,138.9	1	605.3	-
			2	306.1	-				2	306.1	-
			3	347.3	-				3	347.3	-
			4	291.5	-				4	291.5	-
			5	182.1	-				5	182.1	-
			6	406.6	-				6	406.6	-
	15	3,058.0	1	595.9	-		15	3,058.0	1	595.9	-
			2	1,196.9	-				2	1,196.9	-
			3	432.3	-				3	432.3	-
			4-1	277.5	-				4-1	277.5	-
			4-2	277.6	-				4-2	277.6	-
			4-3	277.8	-				4-3	277.8	-
	21	5,282.4	1	389.3	-		21	5,282.4	1	389.3	-
2			389.6	-	2	389.6			-		
3-1			349.8	-	3-1	349.8			-		
3-2			656.6	-	3-2	656.6			-		
3-3			570.0	-	3-3	570.0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	612.5	-				4	612.5	-
			5	566.1	-				5	566.1	-
			6	335.5	-				6	335.5	-
			7-1	352.5	-				7-1	352.5	-
			7-2	330.8	-				7-2	330.8	-
			7-3	330.6	-				7-3	330.6	-
			8	399.1	-				8	399.1	-
	22	2,138.6	1	369.4	-	22	2,138.6	1	369.4	-	
			2	470.1	-			2	470.1	-	
			3	692.8	-			3	692.8	-	
			4	288.3	-			4	288.3	-	
			5	318.0	-			5	318.0	-	
	23-1	1,271.7	1	674.6	-	23-1	1,271.7	1	674.6	-	
			2	597.1	-			2	597.1	-	
	23-2	1,287.4	4-1	415.0		23-2	1,287.4	4-1	415.0		
			4-2	397.8				4-2	397.8		
			4-3	474.6				4-3	474.6		
	27	5,560.6	1	603.6	-	27	5,560.6	1	603.6	-	
			2	412.4	-			2	412.4	-	
			3-1	387.8	-			3-1	387.8	-	
			3-2	379.7	-			3-2	379.7	-	
			3-3	379.7	-			3-3	379.7	-	
			3-4-1	324.8	-			3-4-1	324.8	-	
			3-4-2	324.7	-			3-4-2	324.7	-	
			3-4-3	324.7	-			3-4-3	324.7	-	
			3-4-4	334.0	-			3-4-4	334.0	-	
			3-4-5	334.0	-			3-4-5	334.0	-	
			3-4-6	334.1	-			3-4-6	334.1	-	
4			198.1	-	4			198.1	-		
5			549.4	-	5			549.4	-		
6-1			231.2	-	6-1			231.2	-		
6-2	442.4	-	6-2	442.4	-						
54-1	1,483.3	1-1	317.6	-	54-1	1,483.3	1-1	317.6	-		
		1-2	741.6	-			1-2	741.6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3	424.1	-				1-3	424.1	-
	54-2	1,258.5	3-1	282.0			54-2	1,258.5	3-1	282.0	
			3-2	231.5					3-2	231.5	
			3-3	231.4					3-3	231.4	
			3-4	231.5					3-4	231.5	
			3-5	282.1					3-5	282.1	
			55	2,327.8	1	579.2			-		55
	1-2-1	525.4			-		1-2-1	525.4	-		
	1-2-2	305.8			-		1-2-2	305.8	-		
	1-2-3	305.8			-		1-2-3	305.8	-		
	1-2-4	305.8			-		1-2-4	305.8	-		
	1-2-5	305.8			-		1-2-5	305.8	-		
	56	1,854.3	1	303.8			56	1,854.3	1	303.8	
			2-1	311.6					2-1	311.6	
			2-2	311.6					2-2	311.6	
			3-1	308.3					3-1	308.3	
			3-2	308.9					3-2	308.9	
			3-3	310.1					3-3	310.1	
	57	1,276.3	1	811.5	-		57	1,276.3	1	811.5	-
			2	464.8	-				2	464.8	-
	58-1	769.9	1	769.9	-		58-1	769.9	1	769.9	-
	59	3,508.0	1-1	291.8			59	3,508.0	1-1	291.8	
			1-2	291.8					1-2	291.8	
			2-1	253.3					2-1	253.3	
			2-2	258.4					2-2	258.4	
			2-3	297.5					2-3	297.5	
			2-4	301.6					2-4	301.6	
			2-5	304.7					2-5	304.7	
			2-6	300.5					2-6	300.5	
			2-7	304.6					2-7	304.6	
			2-8	304.7					2-8	304.7	
			2-9	301.6					2-9	301.6	
	2-10	297.5			2-10	297.5					
	60	3,314.7	1-1-1	247.7	-		60	3,314.7	1-1-1	247.7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1-2	247.7	-				1-1-2	247.7	-		
			1-2	495.4	-				1-2	495.4	-		
			2-1-1	267.1	-				2-1-1	267.1	-		
			2-1-2	304.3	-				2-1-2	304.3	-		
			2-1-3	300.3	-				2-1-3	300.3	-		
			2-1-4	290.2	-				2-1-4	290.2	-		
			2-2	389.2	-				2-2	389.2	-		
			2-2-1	385.3	-				2-2-1	385.3	-		
			2-3	387.5	-				2-3	387.5	-		
	61	3,426.0		1-1-1	282.0		-	61	3,426.0		1-1-1	282.0	-
				1-1-2	291.0		-				1-1-2	291.0	-
				1-1-3	287.0		-				1-1-3	287.0	-
				1-1-4	296.0		-				1-1-4	296.0	-
				1-2-1	332.0		-				1-2-1	332.0	-
				1-2-2	321.0		-				1-2-2	321.0	-
				1-2-3	316.0		-				1-2-3	316.0	-
				1-2-4	316.0		-				1-2-4	316.0	-
				1-2-5	320.0		-				1-2-5	320.0	-
				1-2-6	337.0		-				1-2-6	337.0	-
1-2-7	328.0	-	1-2-7	328.0	-								
62	2,099.8		1-1	561.5	-	62	2,099.8		1-1	561.5	-		
			1-2-1	294.5	-				1-2-1	294.5	-		
			1-2-2	273.8	-				1-2-2	273.8	-		
			2-1-2	299.9	-				2-1-2	299.9	-		
			2-2	359.9	-				2-2	359.9	-		
			2-3	310.2	-				2-3	310.2	-		
64	2,860.9		1	2,504.1	-	64	2,860.9		1	2,504.1	-		
			2	356.8	-				2	356.8	-		
65-1	815.0		1	815.0	-	65-1	815.0		1	815.0	-		
66	5,102.2		1-1	370.0	-	66	5,102.2		1-1	370.0	-		
			1-2	422.2	-				1-2	422.2	-		
			1-3	420.6	-				1-3	420.6	-		
			1-4	358.9	-				1-4	358.9	-		
			1-5	356.5	-				1-5	356.5	-		
			1-6	354.2	-				1-6	354.2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7	356.2	-				1-7	356.2	-
			1-8	385.7	-				1-8	385.7	-
			2-1-1	351.7	-				2-1-1	351.7	-
			2-1-2	344.5	-				2-1-2	344.5	-
			2-1-3	346.5	-				2-1-3	346.5	-
			2-1-4	344.2	-				2-1-4	344.2	-
			2-1-5	344.2	-				2-1-5	344.2	-
			2-2	346.8	-				2-2	346.8	-
	67	4,750.9	1-1	317.7			67	4,750.9	1-1	317.7	
			1-2	317.8					1-2	317.8	
			1-3	317.8					1-3	317.8	
			1-4	317.8					1-4	317.8	
			1-5	317.7					1-5	317.7	
			1-6	317.8					1-6	317.8	
			1-7	317.8					1-7	317.8	
			1-8	317.4					1-8	317.4	
			2-1	330.6					2-1	330.6	
			2-2	309.6					2-2	309.6	
			2-3	309.6					2-3	309.6	
			2-4	309.5					2-4	309.5	
			2-5	309.6					2-5	309.6	
			2-6	309.6					2-6	309.6	
	2-7	330.6		2-7	330.6						
	79-2	1,589.6	2-1	359.4	-		79-2	1,589.6	2-1	359.4	-
			2-2	509.4	-				2-2	509.4	-
			3	338.7	-				3	338.7	-
			4	382.1	-				4	382.1	-
	81-1	1,907.0	1-1	467.7	-		81-1	1,907.0	1-1	467.7	-
1-2			347.2	-	1-2	347.2			-		
2-1			298.1	-	2-1	298.1			-		
2-2			298.1	-	2-2	298.1			-		
2-3			495.9	-	2-3	495.9			-		
82	1,500.0	1-1	305.6		82	1,500.0	1-1	305.6			
		1-2	274.7				1-2	274.7			
		1-3	338.0				1-3	338.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4	289.9					1-4	289.9			
			1-5	291.8					1-5	291.8			
	83	1,082.4	1-1	541.2	-		83	1,082.4	1-1	541.2	-		
			1-2	541.2	-				1-2	541.2	-		
	86	3,574.6	1	802.4	-		86	3,574.6	1	802.4	-		
				2-1	371.3	-					2-1	371.3	-
				2-2	296.5	-					2-2	296.5	-
				2-3-1	334.1	-					2-3-1	334.1	-
				2-3-2	334.9	-					2-3-2	334.9	-
				3-1	356.0	-					3-1	356.0	-
				3-2	356.8	-					3-2	356.8	-
				3-3	362.4	-					3-3	362.4	-
					3-4	360.2			-			3-4	360.2
	89	1,749.3	1-1	295.4			89	1,749.3	1-1	295.4			
				1-2	290.6						1-2	290.6	
				1-3	290.6						1-3	290.6	
				1-4	290.7						1-4	290.7	
				1-5	290.6						1-5	290.6	
				1-6	291.4						1-6	291.4	
	90	2,630.4	1	2,630.4	-		90	2,630.4	1	2,630.4	-		
	91	4,070.9	1-1	334.6			91	4,070.9	1-1	334.6			
				1-2	334.0						1-2	334.0	
				1-3	332.5						1-3	332.5	
				1-4	331.1						1-4	331.1	
				1-5	329.6						1-5	329.6	
				1-6	367.6						1-6	367.6	
				1-7	387.2						1-7	387.2	
				1-8	328.0						1-8	328.0	
				1-9	328.0						1-9	328.0	
				1-10	328.0						1-10	328.0	
				1-11	328.0						1-11	328.0	
				1-12	342.3						1-12	342.3	
	92	4,263.4	1-1	243.3			92	4,263.4	1-1	243.3			
				1-2	312.9						1-2	312.9	
				1-3	312.9						1-3	312.9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4	312.9					1-4	312.9	
			1-5	313.1					1-5	313.1	
			1-6	313.1					1-6	313.1	
			1-7	313.1					1-7	313.1	
			1-8	268.0					1-8	268.0	
			1-9	290.2					1-9	290.2	
			1-10	340.1					1-10	340.1	
			1-11	294.1					1-11	294.1	
			1-12	313.9					1-12	313.9	
			1-13	314.9					1-13	314.9	
			1-14	320.9					1-14	320.9	

② 단독주택용지(A-2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2	5	2,348.8	1	219.5		A-2	5	2,348.8	1	219.5	
			2-1	663.8					2-1	663.8	
			2-2	562.4					2-2	562.4	
			3	639.7					3	639.7	
			4	263.4					4	263.4	
	24	2,744.7	1-1	169.9			24	2,744.7	1-1	169.9	
			1-2	396.7					1-2	396.7	
			1-3	383.3					1-3	383.3	
			2	832.9	-				2	832.9	-
			3-1	455.4					3-1	455.4	
			3-2	506.5	-				3-2	506.5	-
	63	3,526.9	1-1	1,182.7	-		63	3,526.9	1-1	1,182.7	-
			2-1	431.6					2-1	431.6	
			2-2	416.6					2-2	416.6	
			2-3	338.3					2-3	338.3	
			3-1	374.3					3-1	374.3	
			3-2	231.4					3-2	231.4	
			4-1	261.0					4-1	261.0	
			4-2	291.0					4-2	291.0	
	68-1	1,748.2	1	385.9			68-1	1,748.2	1	385.9	
			2	423.0					2	423.0	
			3-2	335.7					3-2	335.7	
			4-1	301.9					4-1	301.9	
			4-2	301.7					4-2	301.7	
	77-1	4,438.9	1	292.0			77-1	4,438.9	1	292.0	
			2	3,065.8	-				2	3,065.8	-
			3-1	401.5					3-1	401.5	
			3-2	385.6					3-2	385.6	
			3-2-1	294.0					3-2-1	294.0	
	80-2	643.6	10	643.6	-		80-2	643.6	10	643.6	-
85-1	881.5	2-1	292.5		85-1	881.5	2-1	292.5			
		2-2	309.0				2-2	309.0			
		2-3	280.0				2-3	280.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2	87	2,658.8	1-1	346.7		A-2	87	2,658.8	1-1	346.7	
			1-2	330.5					1-2	330.5	
			1-3	330.6					1-3	330.6	
			1-4	346.8					1-4	346.8	
			2	309.7					2	309.7	
			3	296.3					3	296.3	
			4-1	368.2					4-1	368.2	
			4-2	330.0					4-2	330.0	
	103-1	1,794.7	1	660.0		A-2	103-1	1,794.7	1	660.0	
			2-1	284.5					2-1	284.5	
			2-2	284.5					2-2	284.5	
			2-3	284.5					2-3	284.5	
			2-4	281.2					2-4	281.2	
	104	1,456.0	1	663.3	-	A-2	104	1,456.0	1	663.3	-
			2	792.7	-				2	792.7	-
	105	2,018.6	1	344.9		A-2	105	2,018.6	1	344.9	
			2	302.3					2	302.3	
			3	540.1	-				3	540.1	-
			4	831.3	-				4	831.3	-
	107-1	664.8	1	664.8		A-2	107-1	664.8	1	664.8	
	108-2	1,113.7	1	280.4		A-2	108-2	1,113.7	1	280.4	
			2	833.3	-				2	833.3	-

③ 단독주택용지(A-3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7	3,332.3	1-1	347.0		A-3	7	3,332.3	1-1	347.0	
			1-2	346.9					1-2	346.9	
			1-3	330.4					1-3	330.4	
			1-4	330.3					1-4	330.3	
			2-1	362.2					2-1	362.2	
			2-2	346.5					2-2	346.5	
			2-3	258.6					2-3	258.6	
			3-1	350.6					3-1	350.6	
			3-2	659.8	-				3-2	659.8	-
	8-1	3,063.0	1	905.3	-		8-1	3,063.0	1	905.3	-
			2-1	328.3	-				2-1	328.3	-
			2-2	332.4	-				2-2	332.4	-
			3	521.8					3	521.8	
			4	203.0					4	203.0	
			5	772.2	-				5	772.2	-
	12	2,888.3	1	660.4	-		12	2,888.3	1	660.4	-
			2	638.7	-				2	638.7	-
			3	467.8					3	467.8	
			4-1	330.7					4-1	330.7	
			4-2	330.7					4-2	330.7	
			4-3	460.0					4-3	460.0	
	13	1,296.3	1	158.8			13	1,296.3	1	158.8	
			2	227.2					2	227.2	
			3	910.3	-				3	910.3	-
	16	3,824.4	1-1	283.3	-		16	3,824.4	1-1	283.3	-
			1-2	256.5	-				1-2	256.5	-
			1-3	256.1	-				1-3	256.1	-
			2-1	296.5	-				2-1	296.5	-
			2-2	296.4	-				2-2	296.4	-
			3	314.1					3	314.1	
			4-1	367.4	-				4-1	367.4	-
			4-2	367.3	-				4-2	367.3	-
			5-1-1	277.3	-				5-1-1	277.3	-
			5-1-2	277.3	-				5-1-2	277.3	-
			5-1-3	277.5	-				5-1-3	277.5	-
			5-2	277.4					5-2	277.4	
			5-3	277.3					5-3	277.3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17-1	5,298.3	1	1,108.5	-	A-3	17-1	5,298.3	1	1,108.5	-
			2	239.9					2	239.9	
			3-1	304.2					3-1	304.2	
			3-2	330.6					3-2	330.6	
			3-3-1	331.7	-				3-3-1	331.7	-
			3-3-2	331.6	-				3-3-2	331.6	-
			4-1	275.5	-				4-1	275.5	-
			4-2	866.5	-				4-2	866.5	-
			5	715.8	-				5	715.8	-
			6	794.0	-				6	794.0	-
	30	1,519.7	1	589.6	-	A-3	30	1,519.7	1	589.6	-
			2-1	304.5					2-1	304.5	
			2-2	625.6	-				2-2	625.6	-
	31	1,116.4	1-1	279.0		A-3	31	1,116.4	1-1	279.0	
			1-2	279.1					1-2	279.1	
			1-3	279.1					1-3	279.1	
			1-4	279.2					1-4	279.2	
	32	3,141.7	1-1	257.7		A-3	32	3,141.7	1-1	257.7	
			1-2	257.8					1-2	257.8	
			1-3	280.0					1-3	280.0	
			1-4	661.0	-				1-4	661.0	-
			1-5	262.0					1-5	262.0	
			2-1	845.9	-				2-1	845.9	-
			2-2	577.3	-				2-2	577.3	-
	33	1,949.7	1	1,551.1	-	A-3	33	1,949.7	1	1,551.1	-
			2	231.9					2	231.9	
			3	166.7					3	166.7	
	34	2,243.5	1-1	330.5		A-3	34	2,243.5	1-1	330.5	
			1-2	330.5					1-2	330.5	
			1-3	330.5					1-3	330.5	
			1-4	307.0					1-4	307.0	
			2-1	688.1					2-1	688.1	
			2-2	256.9					2-2	256.9	
	35-1	1,104.3	1-1	422.3	-	A-3	35-1	1,104.3	1-1	422.3	-
			1-2	276.8	-				1-2	276.8	-
			2	405.2					2	405.2	
	36-1	1,366.5	1-1	244.2	-	A-3	36-1	1,366.5	1-1	244.2	-
			1-2	244.2	-				1-2	244.2	-
			1-3	284.3	-				1-3	284.3	-
			1-4	330.0	-				1-4	330.0	-
			2	263.8					2	263.8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37-1	1,486.2	1	336.4		37-1	1,486.2	1	336.4		
			2-1	332.6	-			2-1	332.6	-	
			2-2	314.3	-			2-2	314.3	-	
			3	502.9	-			3	502.9	-	
	38	2,020.7	1-1	336.5		38	2,020.7	1-1	336.5		
			1-2	336.4				1-2	336.4		
			1-3	495.3	-			1-3	495.3	-	
			2-1	284.1	-			2-1	284.1	-	
			2-2	284.2	-			2-2	284.2	-	
			2-3	284.2	-			2-3	284.2	-	
	39	2,210.2	1	193.4		39	2,210.2	1	193.4		
			2	429.0				2	429.0		
			3	176.8				3	176.8		
			4-1	329.3	-			4-1	329.3	-	
			4-2	329.3	-			4-2	329.3	-	
			5-1	376.2				5-1	376.2		
			5-2	376.2				5-2	376.2		
	40	3,274.6	1	2,228.7	-	40	3,274.6	1	2,228.7	-	
			2-1	550.0	-			2-1	550.0	-	
			2-2	495.9	-			2-2	495.9	-	
	42	4,256.5	1	705.4	-	42	4,256.5	1	705.4	-	
			2	878.4	-			2	878.4	-	
			3	1,017.0	-			3	1,017.0	-	
			4	779.2	-			4	779.2	-	
			5-1	397.0				5-1	397.0		
			5-2	285.8				5-2	285.8		
			6	193.7				6	193.7		
	43	1,626.9	1-1	267.1		43	1,626.9	1-1	267.1		
			1-2	234.6				1-2	234.6		
			1-3	273.9				1-3	273.9		
			1-4	572.0	-			1-4	572.0	-	
			1-5	279.3				1-5	279.3		
	44	2,134.3	1-1	337.1	-	44	2,134.3	1-1	337.1	-	
			1-2	337.0				1-2	337.0		
			2-1	431.8				2-1	431.8		
			2-2	297.6				2-2	297.6		
2-3-1			350.0	-	2-3-1			350.0	-		
2-3-2			380.8	-	2-3-2			380.8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47-1	1,658.7	1-1	256.7		A-3	47-1	1,658.7	1-1	256.7	
			1-2	256.4					1-2	256.4	
			1-3	256.3					1-3	256.3	
			1-4	256.3					1-4	256.3	
			2	633.0	-				2	633.0	-
	49	2,890.8	1-1	567.0	-		49	2,890.8	1-1	567.0	-
			1-2	603.6	-				1-2	603.6	-
			1-3	200.0					1-3	200.0	
			2	377.4					2	377.4	
			3-1	942.0	-				3-1	942.0	-
			3-2	200.8					3-2	200.8	
	50	3,162.7	1	438.1	-		50	3,162.7	1	438.1	-
			2	211.1					2	211.1	
			3	368.5					3	368.5	
			4-1	266.5	-				4-1	266.5	-
			4-2	266.5	-				4-2	266.5	-
			5	386.6					5	386.6	
			6-1	330.6	-				6-1	330.6	-
			6-2	302.8	-				6-2	302.8	-
			7	353.4					7	353.4	
			8	238.6					8	238.6	
	52	2,769.0	1	1,907.7	-		52	2,769.0	1	1,907.7	-
			2	861.3	-				2	861.3	-

④ 단독주택용지(A-4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4	6	2,107.7	1	406.8		6	2,107.7	1	406.8		
			2	953.9	-			2	953.9	-	
			3	747.0	-			3	747.0	-	
	25	1,810.2	1	572.5	-	25	1,810.2	1	572.5	-	
			2	572.5	-			2	572.5	-	
			3	665.2	-			3	665.2	-	
	29	2,625.8	1-1-1	531.3		29	2,625.8	1-1-1	531.3		
			1-1-2	531.3				1-1-2	531.3		
			1-2-1	531.2	-			1-2-1	531.2	-	
			1-2-2	531.1	-			1-2-2	531.1	-	
			2	500.9				2	500.9		
	45	1,830.2	1-1-1-1	279.8		45	1,830.2	1-1-1-1	279.8		
			1-1-1-2	296.9				1-1-1-2	296.9		
			1-1-1-3	306.0				1-1-1-3	306.0		
			1-1-2	572.3	-			1-1-2	572.3	-	
			1-2	375.2				1-2	375.2		
	46-1	2,448.1	1	248.8		46-1	2,448.1	1	248.8		
			2	514.5	-			2	514.5	-	
			3-1	247.4				3-1	247.4		
			3-2	297.5				3-2	297.5		
			3-3	200.0				3-3	200.0		
			4-1	470.0				4-1	470.0		
			4-2	469.9				4-2	469.9		
	48-1	987.5	1	987.5	-	48-1	987.5	1	987.5	-	
	51	3,428.4	1-1	519.4	-	51	3,428.4	1-1	519.4	-	
			1-2	519.5	-			1-2	519.5	-	
			2	764.7	-			2	764.7	-	
			3-1-1	220.4				3-1-1	220.4		
			3-1-3	213.0				3-1-3	213.0		
			3-2	326.5				3-2	326.5		
3-3			546.9		3-3			546.9			
3-4			318.0		3-4			318.0			

⑤ 다세대/연립주택용지(B-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19	2,499.4	1-1	701.1		19	2,499.4	1-1	701.1		
			1-2	718.6				1-2	718.6		
			1-3	705.7				1-3	705.7		
			2	374.0				2	374.0		
	20	2,986.3	1-1	807.2		20	2,986.3	1-1	807.2		
			1-2	851.9				1-2	851.9		
			2	1,327.2				2	1,327.2		
	26	1,919.8	1-1	735.3		26	1,919.8	1-1	735.3		
			1-2	703.6				1-2	703.6		
			2	129.5				2	129.5		
			3	351.4				3	351.4		
	109-2	1,646.9	2-1	338.5		109-2	1,646.9	2-1	338.5		
			2-2	338.7				2-2	338.7		
			2-3	338.7				2-3	338.7		
			2-4	366.8				2-4	366.8		
			3	264.2				3	264.2		
	110	3,682.2	1-1-1	758.0		110	3,682.2	1-1-1	758.0		
			1-1-2	785.5				1-1-2	785.5		
			1-2	561.2				1-2	561.2		
			2-1	350.1				2-1	350.1		
			2-2	361.3				2-2	361.3		
			2-3	432.2				2-3	432.2		
			2-4	433.9				2-4	433.9		
	111	3,319.4	1	296.9		111	3,319.4	1	296.9		
			2	272.4				2	272.4		
			3	1,023.6				3	1,023.6		
			4-1	379.2				4-1	379.2		
			4-2	349.7				4-2	349.7		
			4-3	360.7				4-3	360.7		
			5-1	318.5				5-1	318.5		
			5-2	318.4				5-2	318.4		
	112	1,540.9	1-1	394.5		112	1,540.9	1-1	394.5		
			1-2	376.1				1-2	376.1		
			1-3	376.2				1-3	376.2		
			1-4	394.1				1-4	394.1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114	3,186.1	1	729.6		114	3,186.1	1	729.6		
			2	688.9				2	688.9		
			3	537.2				3	537.2		
			4	432.7				4	432.7		
			5	797.7	-			5	797.7	-	
	115	2,398.4	1-1-1	406.9		115	2,398.4	1-1-1	406.9		
			1-1-2	515.9				1-1-2	515.9		
			2-1	595.3				2-1	595.3		
			2-2	880.3				2-2	880.3		
	116	4,696.2	1-1	371.2		116	4,696.2	1-1	371.2		
			1-2	382.1				1-2	382.1		
			1-3	342.8				1-3	342.8		
			1-4	361.2				1-4	361.2		
			2-1	479.2	-			2-1	479.2	-	
			2-2	479.1	-			2-2	479.1	-	
			3	395.5				3	395.5		
			4-1	337.7				4-1	337.7		
			4-2	405.5				4-2	405.5		
			5-1	383.1				5-1	383.1		
			5-2	374.7				5-2	374.7		
	117	3,483.0	1	780.6	-	117	3,483.0	1	780.6	-	
			2	711.9	-			2	711.9	-	
			3	630.8	-			3	630.8	-	
			4-1	345.6				4-1	345.6		
			4-2	333.4				4-2	333.4		
			4-3	346.8				4-3	346.8		
			4-4	333.9				4-4	333.9		
	118	3,836.8	1-1	393.0		118	3,836.8	1-1	393.0		
			1-2	392.9				1-2	392.9		
			1-3	392.9				1-3	392.9		
			2-1	660.6				2-1	660.6		
			2-2	653.5				2-2	653.5		
			3-1-1	330.3				3-1-1	330.3		
			3-1-2	332.0				3-1-2	332.0		
			3-2-1	341.1				3-2-1	341.1		
			3-2-2	340.5				3-2-2	340.5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119	3,328.3	1	1,769.4	-	119	3,328.3	1	1,769.4	-	
			2-1	768.0				2-1	768.0		
			2-2-1	386.7				2-2-1	386.7		
			2-2-2	404.2				2-2-2	404.2		
	120	3,038.5	1-1	437.2		120	3,038.5	1-1	437.2		
			1-2	732.8	-			1-2	732.8	-	
			2	630.9				2	630.9		
			3	876.3				3	876.3		
			4	361.3				4	361.3		
	121	2,571.4	1-1	419.2		121	2,571.4	1-1	419.2		
			1-2	412.0				1-2	412.0		
			1-3	640.9				1-3	640.9		
			1-4	548.1	-			1-4	548.1	-	
			2-1	287.4				2-1	287.4		
			2-2	263.8				2-2	263.8		
	122	1,351.9	1	308.6		122	1,351.9	1	308.6		
			2	375.1				2	375.1		
			3	506.2	-			3	506.2	-	
			4	162.0				4	162.0		

⑥ 연립주택용지(C-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C-1	53-2	14,717.3	10	8,423.2		C-1	53-2	14,717.3	10	8,423.2	
			11	6,294.1					11	6,294.1	

⑦ 아파트용지(D-1 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D-1	53-1	33,749.1	1	520.6		D-1	53-1	33,415.2	1	520.6	
			2	570.9					2	570.9	
			3	200.2					3	200.2	
			4-1	4,009.6					4-1	4,009.6	
			4-2	5,540.6					4-2	5,540.6	
			5	3,347.5					5	3,212.2	
			6	2,725.2					6	2,643.8	
			7	778.4					7	778.4	
			8	1,157.9					8	1,084.5	
			9	14,898.2					9	10,178.25	
			10	4,676.15							
	69-1	20,697.3	1	5,891.5		69-1	20,697.3	1	5,891.5		
			2	14,805.8				2	14,805.8		
	70	28,370.9	1	28,370.9		70	28,370.9	1	28,370.9		
	93-1	18,948.9	3	18,386.6		93-1	18,948.9	3	18,386.6		
			8	562.3				8	562.3		
	94	39,757.4	1	30,135.1		94	39,757.4	1	30,135.1		
			2	9,622.3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102	35,665.9	1	35,665.9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9획지를 분할하여, 10획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9획지 공동주택용지 일부가 시지정문화재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풍산 김씨 종중묘)에 위치하여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획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및 획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로 가구 면적 및 5, 6, 8, 9획지면적 감소

⑧ 아파트용지(D-2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D-2	78-1	21,077.2	1	21,077.2		D-2	78-1	21,077.2	1	21,077.2	
	80-1	13,267.1	3	13,267.1			80-1	13,267.1	3	13,267.1	
	108-1	18,427.1	3	18,427.1			108-1	18,427.1	3	18,427.1	

⑨ 아파트용지(D-2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2	46-2	320.0	6	320.0		D-2	46-2	320.0	6	320.0	

⑩ 상업용지(E-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E-1	72-1	4,692.8	2	418.9	-	E-1	72-1	4,692.8	2	418.9	
			3	582.0					3	582.0	
			4	1,345.7					4	1,345.7	
			5-1	605.6					5-1	605.6	
			5-2	605.5					5-2	605.5	
			5-3	605.5					5-3	605.5	
			6	529.6					6	529.6	
	74-1	4,599.4	1	385.8		E-1	74-1	4,599.4	1	385.8	
			2	972.1					2	972.1	
			3	941.9					3	941.9	
			6	504.1					6	504.1	
			7	787.1					7	787.1	
			8	1,008.4					8	1,008.4	
	97-1	6,922.7	2	412.9	-	E-1	97-1	6,922.7	2	412.9	
			3	412.8					3	412.8	
			4	443.7					4	443.7	
			5-1	728.6					5-1	728.6	
			5-2	1,463.4					5-2	1,463.4	
			6	761.4					6	761.4	
			7	818.0					7	818.0	
			8	1,315.0					8	1,315.0	
			10	566.9					10	566.9	
			99-1	6,254.5					1	659.4	
	2	460.5			2	460.5					
	3-1	771.5			3-1	771.5					
	4-1	622.7			4-1	622.7					
	4-2	612.7			4-2	612.7					
	7	938.6			7	938.6					
8	1,635.1	8			1,635.1						
9	554.0	9			554.0						

① 상업용지(E-2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E-2	71	3,547.9	1	1,825.1	-	E-2	71	3,547.9	1	1,825.1	-
			2	1,180.9					2	1,180.9	
			3	541.9					3	541.9	
	73	3,415.8	1	528.0			73	3,415.8	1	528.0	
			2	1,891.5					2	1,891.5	
			3	996.3					3	996.3	
	75	3,988.0	1	533.2			75	3,988.0	1	533.2	
			2-1	1,051.8					2-1	1,051.8	
			2-2	1,051.6					2-2	1,051.6	
			3	1,351.4					3	1,351.4	
	95	3,497.9	1	768.3			95	3,497.9	1	768.3	
			2	805.4					2	805.4	
			3	1,541.3					3	1,541.3	
			4	382.9					4	382.9	
	96	4,894.0	1	968.1			96	4,894.0	1	968.1	
			2	526.2					2	526.2	
			3	838.8					3	838.8	
			4	836.2					4	836.2	
			5	850.6					5	850.6	
			6	874.1					6	874.1	
	98	4,510.0	1	554.1			98	4,510.0	1	554.1	
			2	942.0					2	942.0	
			3	524.2					3	524.2	
			4	864.6					4	864.6	
			5	858.8					5	858.8	
			6	766.3					6	766.3	
	100	3,445.4	1	938.0			100	3,445.4	1	938.0	
			2	705.4					2	705.4	
			3	400.6					3	400.6	
			4	651.5					4	651.5	
5			749.9		5	749.9					

⑫ 학교용지(F-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⑬ 공공청사용지(G-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80-3	970.3	1	970.3	경찰서		80-3	970.3	1	970.3	경찰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⑭ 주차장용지(H-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H-1	74-2	1,409.1	5	1,409.1		H-1	74-2	1,409.1	5	1,409.1	
	97-2	1,411.3	1	1,411.3			97-2	1,411.3	1	1,411.3	
	99-2	1,408.2	6	1,408.2			99-2	1,408.2	6	1,408.2	

⑮ 체육시설용지(I-1 용도)(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I-1	72-2	1,409.5	1	1,409.5		I-1	72-2	1,409.5	1	1,409.5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① 단독주택용지(A-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② 단독주택용지(A-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105,107-1, 108-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③ 단독주택용지(A-3)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BL	허용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④ 단독주택용지(A-4)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4	6, 25, 29, 45, 46-1, 48-1, 51 BL	허용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⑤ 공동주택용지(B-1: 다세대/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B	
		형 태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⑥ 공동주택용지(C-1: 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53-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C	
		형 태	○별표3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⑦ 공동주택용지(D-1: 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⑧ 공동주택용지(D-2: 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78-1, 80-1, 108-1 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단,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⑨ 공동주택용지(D-3: 아파트-KAL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46-2BL	용도	허용용도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한 계 선		

⑩ 상업용지(E-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72-1, 74-1, 97-1, 9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30%이하	
		높 이	○ 3-5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벽 면 지 정 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⑪ 상업용지(E-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2	71, 73, 75, 95, 96, 98, 100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550%이하	
		높 이	○ 5~8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 40m 도로변: 건축한계선 3.0m	
		벽면지정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⑫ 학교용지(F-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1	28, 78-2, 78-3, 88, 10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F-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F-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한 계 선	○ 12~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2.0m ○ 소음에 지장이 있고,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			

⑬ 공공청사용지(G-1)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	69-2, 79-1, 80-3, 80-4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G-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G-1의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17~20m 도로변: 1.0m	

⑭ 주차장용지(H-1)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H-1	74-2, 97-2, 99-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H-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H-1의 불허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이	○28m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⑮ 체육시설용지(I-1)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72-2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I-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I-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 이	○28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5의 A-1, A-2, A-3, A-4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5의 B-1, C-1, D-1, D-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BL(6LT)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5의 E-1, E-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E-2	71, 73, 75, 95, 96, 98, 100BL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차량 및 주차계획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6의 B, C, D 차량 및 주차계획(도면참조)	-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6LT)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E-2	71, 73, 75, 95, 96, 98, 100BL		
I-1	72-2	○ 별표6의 I-1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도면참조	○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	-

■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원당지구단위계획구역	○ 별표8의 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포장 등	-

■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원 · 녹지	공원 · 녹지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 - 구릉지형 공원으로서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 -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 운동, 휴식,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 -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 ○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흥미성, 쾌적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 45%이상 확보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Mounding)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 ○ 속성수종을 선정,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 배치계획
- 【별표3】 건축물 형태계획
- 【별표4】 건축물 색채계획
- 【별표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변경있음)

■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550	5-8층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I-1	○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D-1 용도에서 허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은 53-1가구 10획지에 한하고,
 53-1가구 10획지의 허용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에 한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동주택용지에 용도 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	•53-1가구 9획지 공동주택용지 일부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풍산김씨 종중묘)에 위치하여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허용 가능한 건축물용도 부여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550	5-8층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 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I-1	○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 광로변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 ○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m,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5m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 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20m,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0m, 1.5m, 3.0m 지정 ○ 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 (1층에 한함)를 지정
공공청사	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1m)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3】 건축물 형태 계획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및 외 관
단 독 주 택 용 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을 설치토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7/10 ○ 옥상의 물탱크 설치시 지양하며,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2m, 대문 1.8m 이하로 규제 -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 ○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시 측면벽을 이용(권장)
공 동 주 택 용 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 ~ 7/10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 설치 ○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시 측면벽을 이용(권장)→B1용도에 한함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 업 용 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별표4】 건축물 색채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단 강조색은 가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D-3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 12m이상의 도로변(공동주택지내) 대지에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쌈지공원 - Pocket park)으로 조성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이상 설치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D-3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도면참조)을 공개공지로 확보(규제)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 쉼터 역할을 유도 ○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이상으로 확보 ○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1층 높이 4m이상),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 주택 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공동 주택 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 용을 준용함
상업 용지	E-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해 방지
	E-2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체육 시설 용지	I-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미만의 도로의 각각부의 경우 각 3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A-3, A-4 B-1, C-1 D-1, D-2 E-1, E-2	보행자 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D-3	보행자 전용도로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등)
옥외광고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름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갓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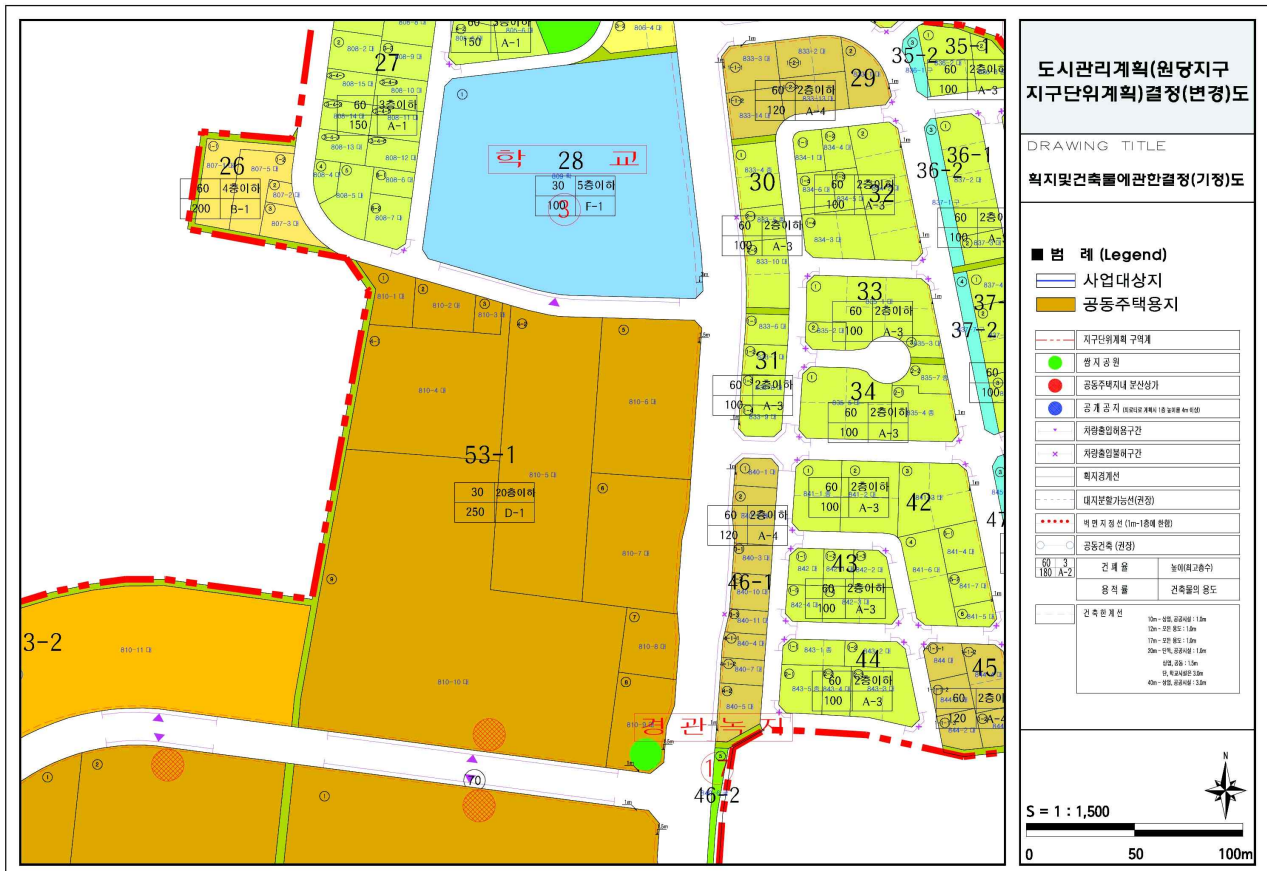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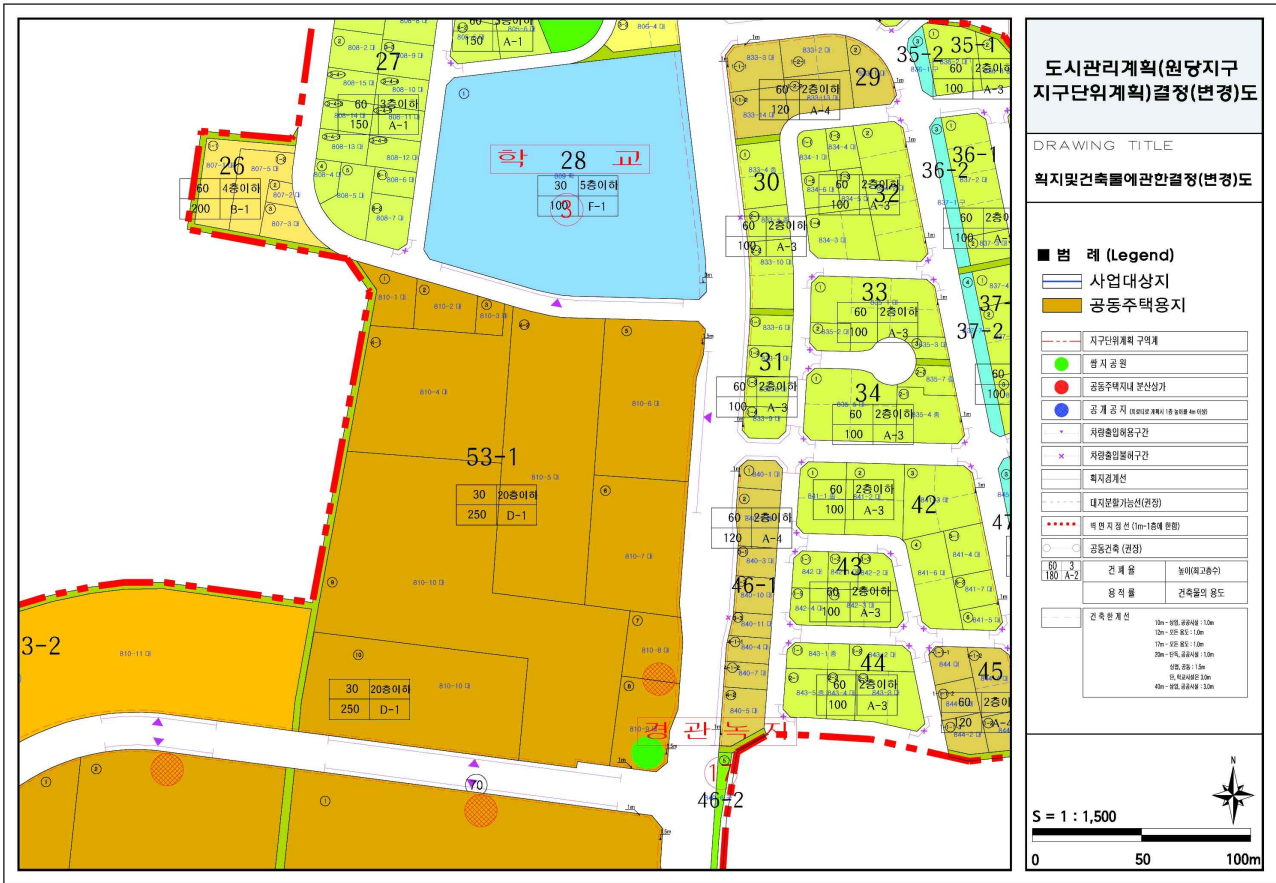
변경 내용	변경 사유
<p>•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p>	<p>-당초 출입구 위치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위치하여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획지를 부여함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 진·출입을 위한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p>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석로 6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5.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5-2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7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6 (가좌동)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7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3-7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동 393-14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7번길 20 (월항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동 394-4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45번길 36 (월항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5-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25-15 (청라)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5-2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23번길 4-2 (석남동)	건물 멸실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88번길 15 (석남동)	건물 멸실	20090710	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56 (석남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원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B동
4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58 (석남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원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5	인천광역시 서구 황마로134번길 18-6 (당하동)	가설건축물 철거	20081231	황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533호(2019.12.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1-503호선, 사업명: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중로1-503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
- 명칭: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503	20 (20~24)	20 (20~24)	673	-	59	614	1,9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개설공사

구분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지분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6,872	1,933						
1	서구 백석동	11-1	전	1,064	1,062	박*식	인천 남동구 구월동 *~**				
2	서구 백석동	11-2	전	661	530	김*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은행마을태평아파트 ***~****				
3	서구 백석동	10	전	684	104	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동 ****호(검암동, 풍림아이원2차)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병방 지점)	근저당권
4	서구 백석동	12	전	1,339	126	광산김씨 관공과 종친회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 (백석동)				
5	서구 백석동	13	도로	2,456	1	인천광역시					
6	서구 백석동	226-10	도로	668	110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827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복합 체육관	원당동 825-1	1,409.5	-	1,409.5	2019.12.30.	
신설	2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원당동 850-2	-	증) 861.3	861.3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861.3㎡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하고자 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A-3 용도) (변경)

기정						변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52	2,769.0	1	1,907.7		A-3	52-1	1,907.7	1	1,907.7	
			2	861.3					-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번호 변경 및 획지 제척 - 가구번호: 52 → 52-1 - 획지: 2번 획지 제척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가구번호 변경 및 획지 제척

2) 체육시설용지(I-2 용도) (변경)

기정						변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	-	-	-	-		I-2	52-2	861.3	2	861.3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용지 신설 - 가구번호: 52-2 - 획지면적: 8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 신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A-3 용도) (변경)

도면 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분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A-3	7,8-1,12,13,16,17-1,3 0,31,32,33,34,35-1,36 -1,37-1,38,39,40,42,4 3,44,47-1,49,50, 52BL	7,8-1,12,13,16,17-1,3 0,31,32,33,34,35-1,36 -1,37-1,38,39,40,42,4 3,44,47-1,49,50, 52-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00%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단독주택용지 가구번호 변경 - 가구번호: 52 → 52-1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용지(A-3) 가구번호 변경

2) 체육시설용지(I-2) (변경)

도면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분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I-2	-	52-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I-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I-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00%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체육시설용지 신설 - 도면번호: I-2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I-2) 신설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 (별표참조)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I-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이하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체육시설용지의 용도 결정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시설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I-2) 신설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

용 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체육 시설 용지	I-2	차량 동선	○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 시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체육시설용지의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 체육시설용지(I-2)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4, 서구 서곶로 307)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3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0-182호(1990.12.26.)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명: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761.7m²

○ 사업내용: 부설주차장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488-8	대	761.7	761.7	기획재정부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도시기반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25호선, 중로1-115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6.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도로명: 중로2-225호선, 중로1-115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중로 2-225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중로2-225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87-8번지 일원
- 중로1-115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225호선, 중로1-115호선)
- 명칭 : 중로2-225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비고
당초	도로	중로	2	225	15	1,130	-	
변경	도로	중로	2	225	15	998	14,937	
당초	도로	중로	1	115	10~20	399		
변경	도로	중로	1	115	10~15	396	4,2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중로2-225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곡동	244-4	대	820	9	전*순	인천시 서구 대곡동 ***				
2	“	244-1	대	820	138	전*순	인천시 서구 대곡동 ***				
3	“	687-8	구	46,785	470	국	국토교통부				
4	“	687-7	구	4,282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5	“	349-1	답	2,806	1,204	이*훈	인천시 서구 대곡동 ***				
6	“	349-2	답	995	239	김*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				
7	“	687-3	도	6,013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	688	구	8,933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	349-4	답	1,958	296	임*숙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10	“	350	답	2,007	305	심*숙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 권	
11	“	305-1	답	1,882	278	심*숙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 권	
12	“	305-2	답	1,706	310	심*숙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 권	
13	“	305-3	답	1,701	301	풍산* 씨회사 복공과 중중	인천시 서구 대곡동 ***				
14	“	693-2	구	613	2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	350-4	답	3,103	156	이*훈	인천시 서구 대곡동 ***				
16	“	693-10	구	203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	산42-1	임	404	162						
18	“	367-3	임	166	66	김*자	서울시 강서구 목동 ***				
19	“	693-9	도	726	5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	368-1	구	79	55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1	“	363-2	구	1,011	8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2	“	361-25	전	58	58	지*하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국민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 권	
						지*수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이*은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	367	전	457	300	홍*길	경기도 김포읍 장기리 ***				
24	“	742	도	407	403	국	국토교통부				
25	“	365-4	도	1,190	1,026	국	국방부				
26	“	361-26	전	1	1	지*하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지*수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이*은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27	“	361-15	잡	495	33	성*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				
28	“	367-4	임	399	399	김*자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	농협은행(주)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29	“	361-17	전	79	4	성*석	경남 김해시 장유로***4번길 ***				
						엄*연	경남 김해시 장유로***4번길 ***				
						성*준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				
						백*영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				
30	“	361-23	도	17	9	공	서구				
31	“	361-22	전	37	19	박*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컵로***, ***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	
32	“	365-10	임	233	224	정*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정*모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번길 ***				
33	“	365-6	대	608	124	이*영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정*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정*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				
34	“	361-11	전	625	17	이*종	인천시 서구 대곡동 ***				
35	“	366	전	181	181	이*선	인천시 서구 석남동 ***				
36	“	361-1	대	669.6	44	이*종	인천시 서구 대곡동 ***				
37	“	365-5	대	708	140	정*모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38	“	365-9	임	5,559	10	정*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정*모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정*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정*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이*영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정*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	365-15	도	20	20	공	서구				
40	“	365-17	임	40	40	배*숙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				
41	“	365-14	전	134	134	김*임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3번길*				
42	“	365-3	도	142	142	국	국방부				
43	“	산45	임	2,083	20						
44	“	산7-4	임	2,433	476						
45	“	415-17	임	151	151	최*수	인천시 서구 설원로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김*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	근저당권	
						유*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번길***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주식회사*산씨에지	인천시 서구 설원로 **,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46	“	415-13	전	63	63	최*수	인천시 서구 설원로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김*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	근저당권	
						유*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번길***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주식회사*산씨에지	인천시 서구 설원로 **,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47	“	415-9	전	108	103	최*수	인천시 서구 설원로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김*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	근저당권	
						유*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번길***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주식회사*산씨에지	인천시 서구 설원로 **,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48	“	415-2	도	307	304	국	국방부				
49	“	419-3	전	4,543	1,558	국	국방부				
50	“	735	도	1,724.1	685	국	국토교통부				
51	“	산16	임	3,570	89						
52	“	737-1	구	1,303	52	국	국토교통부				
53	“	413-2	답	187	166	김*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근저당권	
54	“	412-1	도	592	246	국	국방부				
55	“	412-6	답	433	409	김*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6	“	412-7	도	107	107	김*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근저당권	
57	“	412-4	답	201	201	김*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58	“	733	도	3,9253	406	국	국토교통부				
59	“	412-5	도	15	15	공	서구				
60	“	431	전	2,069	5	전*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				
						김*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61	“	431-1	도	70	48	정*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정*순	인천시 북구 부개동 ***				
						정*복	인천시 북구 부개동 ***				
62	“	411	전	1,327	218	정*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194				
63	“	411-1	도	619	619	국	국방부				
64	“	432-5	대	28	28	김*석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2	근저당권	
						정*모	인천시 서구 대곡동 ***				
65	“	438-9	장	1,387	229	김*근	김포시 사우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황*순	김포시 사우동 ***				
66	“	433-2	도	1	1	박*학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번길***				
67	“	438-3	잡	565	78	정*모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				
68	“	438-5	대	620	131	정*모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				
69	“	438-6	과	125	32	정*모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				
70	“	433-3	도	3	3.00	조*근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71	“	725	구	855	37	국	국토교통부				
72	“	437	전	390	63	정환기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194				
73	“	738	도	26	21	국	국토교통부				
74	“	산3-2	임	754	227						
75	“	산3-1	임	602	407						

□ 사업명 : 중로1-115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마전동	685-31	도	214	90	송*순	인천시 서구 마전동 ***				
2	“	685-17	도	137	107	공	서구				
3	“	685-58	임	238	97	허*	인천시 서구 마전동 ***				
4	“	685-57	도	137	36	김*숙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5	“	685-16	도	536	536	공	서구				
6	“	685-15	도	57	57	공	서구				
7	“	685-30	임	505	252	허*	인천시 서구 마전동 ***				
8	“	685-23	수	9,550	39	공	인천시				
9	“	685-24	임	268	219	봉*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이*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송*규	인천시 서구 검안동 ***				
						최*수	인천시 서구 검안동 ***				
						배*현	인천시 서구 검안동 ***				
						박*덕	인천시 서구 백석동 ***				
10	“	산101-8	임	1,568	158	조*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				
						강*숙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				
11	“	686-119	대	27	27	사유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12	“	686-109	임	2,769	461	이*구	인천시 동구 금곡동 **	주식회사 서해건설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근저당권	
13	“	685-3	도	725	725	공	서구				
14	“	223-17	임	4,179	398	김*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15	“	223-16	임	4,179	862	김*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				
16	“	산85-32	임	197	197	*이큐글로벌(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중로2-225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곡동	244-1	공장	스레트	109.0㎡		전*순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공장	천막	19.0㎡						
2	“	361-25	출입문	철재	16.1㎡		지*하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			
			출입문	철재	9.0㎡						
			담장	능형망	28.5㎡						
			화장실	이동식	1EA						
3	“	367-4	사무실	컨테이너	1EA		김*자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			
4	“	365-10	사무실	컨테이너	1EA		정*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공장	천막	32.0㎡						
5	“	365-6	공장	천막	80.0㎡		이*영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길**			
			창고	컨테이너	2EA						
			담장	EGI	112.0㎡						
			출입문	철재	9.0㎡						
			화장실	이동식	1EA						
6	“	178-21	창고	천막	1.0㎡		김*임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창고	컨테이너	1EA						
			창고	컨테이너	1EA						
			공장	R.P	139.0㎡						
			담장	EGI	72.0㎡						
			사무실	컨테이너	2EA						
7	“	419-3	담장	콘크리트블럭	219.0㎡		국	국방부			
8	“	412-6	담장	철재	187.2㎡		김*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			
			담장	메쉬	74.4㎡						
9	“	411	담장	EGI	110.4㎡		전*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사무실	컨테이너	1EA						
10	“	438-9	출입문	EGI	15.0㎡		김*근	김포시 사우동 ***			
			공장	함석	12.0㎡						
			공장	함석	51.0㎡						
			출입문	철재	64.0㎡						
			출입문	철재	12.0㎡						
11	“	432-5	담장	메쉬	12.0㎡		정*모	경기도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			
12	“	438-5	공장	스레트	21.0㎡		정*모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			
			출입문	철재	12.0㎡						
			공장	R.P	17.0㎡						
			공장	스레트	8.0㎡						
			담장	능형망	25.5㎡						

□ 사업명 : 중로1-115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마전동	685-31	사무실	컨테이너	2EA		송*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	“	685-3	담장	철재+콘크리트	813.6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	산85-3 2	준공석	석재	0.5㎡		*이큐글로벌(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			
			담장	메쉬	6.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46호(2014.09.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1-2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소로1-2
호선)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소로1-2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2호선)
-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1-2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소로	1	2	10	10	551	331	-	220	3,777
변경	소로	1	2	10	10	551	331	220	-	2,200
합 계				10	10	551	331	220	-	5,977(5,5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인천식품단지개발(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 (오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 붙임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소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전력주

연번	고 유 번 호	소 유 자	비 고
1	8428B991	한국전력공사	
2	8428B091	한국전력공사	
3	8425B191	한국전력공사	
4	5428B292	한국전력공사	

통신주

연번	고 유 번 호	소 유 자	비 고
1	미 상	KT	
2	미 상	KT	
3	미 상	KT	
4	미 상	KT	
5	미 상	KT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명 : 소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상권자	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84-52	구	65	국(국토교통부)			
2		487-3	답	3	인천광역시			
3		716-1	도	16	국(국토교통부)			
4		716	도	223	국(국토교통부)			
5		486-1	전	5	인천광역시 서구			
6		716-4	도	1	국(국토교통부)			
7		477-3	전	134	인천광역시 서구			
8		478-13	전	104	인천광역시 서구			
9		478-14	도	19	인천광역시 서구			
10		716-5	도	187	국(국토교통부)			
11		470-17	임	443	인천광역시 서구			
12		456-45	답	1	인천광역시			
13		456-44	전	107	인천광역시 서구			
14		476-1	전	137	인천광역시 서구			
15		477-5	전	358	인천광역시 서구			
16		478-12	대	3	인천광역시 서구			
17		478-15	전	61	인천광역시 서구			
18		478-16	전	122	인천광역시 서구			
19		479-4	대	208	인천광역시 서구			
20		480-3	대	3	인천광역시 서구			
21		470-16	도	2	인천광역시 서구			
계				2,20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840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공직선거법 218의 8 (선거인명부 작성)
-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사용일자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선거전용22	기관장인	2.4 x 2.4	공직선거법 218의 8 (선거인명부 작성)	2020.5.25.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선거전용22	공직선거법 218의 8 (선거인명부 작성)	2020년 5월 25일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민원봉사과민원전용3	인증기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2020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4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2-22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6.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2-226호선, 사업명: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44-3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26	15	집산도로	1,316	대2-59	북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제98-118호 (98.06.12)	
변경	중로	2	226	15* (15~20)	집산도로	1,316	대2-59	북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제98-118호 (98.06.12)	경미한 변경

* : 도로 대표 폭원(변동없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26	중로2-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변경 폭원: 15m→15m(15~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노선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37호, 2020.02.24.) 으로 발생된 맹지 발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26호선)
- 명칭 :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고
당초	도로	중로	2	226	15	1,160	-	
변경	도로	중로	2	226	15~20	1,316	21,66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종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곡동	519-1	잡	1,209	10	주)*성자동차공업사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2	“	519-3	도	166	35	공	인천시				
3	“	519-2	도	69	15	박*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4	“	519-4	도	43	31	공	인천시				
5	“	519-8	대	511	147	주)*우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6	“	519-13	답	337	337	주)*성자동차공업사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20	근저당권	
7	“	522-1	잡	1,415	730	주)*우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8	“	522-3	잡	539	272	주)*우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9	“	522-2	잡	367	211	주)*우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10	“	519-9	잡	214	127	주)*우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11	“	717	도	368	76	국	국토교통부				
12	“	518-3	대	951	5	*진보드(주)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79	근저당권	
13	“	523-3	임	905	23	이*영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14	“	523-2	전	179	179	김*정	인천시 남구 남주길 ***번길 **				
15	“	523-1	도	284	284	공	서구				
16	“	532-2	임	10,374.7	13	국	국방부				
17	“	709	도	461.4	453	국	국토교통부				
18	“	524-2	도	64	51	공	서구				
19	“	524-1	잡	760	165	이*숙	인천시 서구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35블럭7롯데	근저당권	
20	“	523-4	임	169	169	이*영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21	“	526	답	2,748	16	이*웅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				
22	“	527-4	임	399	220	전*택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				
23	“	523-5	임	227	101	이*영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24	“	527-2	도	227	101	공	서구				
25	“	527-3	임	3,168	719	전*택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6	금곡동	529-3	도	149.1	4	공	서구				
27	“	531-3	도	46	27	공	서구				
28	“	531-2	도	126	49	윤*철	경기도 고양시 용강면 하중리				
29	“	531-5	전	948	948	윤*영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 저당권	
30	“	684-79	구	2,732.6	228	국	국토교통부				
31	“	533-1	답	353	350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32	“	534-2	대	152	152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33	“	534-3	과	1,213	21	신*희	인천시 가정동 ***				
34	“	534-4	전	297	280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35	“	534-5	과	129.9	129.9	신*희	인천시 서구 가정동 ***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36	“	534-6	과	318.1	318.1	신*희	인천시 서구 가정동 ***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37	“	537-1	전	374	370	신*희	인천시 서구 가정동 ***				
38	“	537	전	812	10	신*희	인천시 서구 가정동 ***				
39	“	536-1	답	991	308	이*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28	근저당권 저당권	
40	“	536-2	답	919	251	이*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41	“	536-3	답	1,464	329	김*희	인천시 서구 금곡동 ***				
42	“	536-4	답	1,197	9	류*남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	농협은행(주)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43	“	603-9	전	66	52	우*석	인천시 서구 심곡로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44	“	603-5	답	684	656	유*동	인천시 남구 도화동 ***				
45	“	603-7	답	17	5	공	서구				
46	“	603-1	도	28.4	24	공	서구				
47	“	604-2	도	17	4	공	서구				
48	“	705	도	435.8	8	국	국토교통부				
49	“	674-3	답	13	6	이*석	인천시 서구 금곡동 ***				
50	“	672-3	도	69	12	이*주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51	“	705-1	도	911.6	276	국	국토교통부				
52	“	604-1	전	2,549	71	손*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근저당권	
53	“	684-80	구	80.1	80.1	국	국토교통부				
54	“	672-5	도	117	117	이*주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55	“	672-2	대	776.00	2.00	이*주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6	금곡동	659	대	1,806	2	김*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길*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차*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길				
57	“	671-6	답	258	257	김*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길*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차*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길				
58	“	705-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59	“	671-2	대	606	12	안*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최*규	인천시 부평구 화당로***번길**				
60	“	670-1	장	976	165	노*조	인천시 서구 승학로 ***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근저당권	
61	“	670-5	답	430	224	고*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62	“	670-3	대	757.2	340	고*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63	“	670-4	대	760	45	이*재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가길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64	“	670-2	대	655	312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65	“	660-2	전	979	112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66	“	660	대	528	22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67	“	661-1	전	1,108	321	강*임	인천시 서구 금곡동 569				
68	“	662-1	입	364	22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69	“	662	입	1,434	532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70	“	649-1	전	4,057	53	유*자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번길**				
						임*숙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임*주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				
						임*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길 **				
71	“	707	도	455.1	47	국	국토교통부				
72	“	632	전	1,654	158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73	“	633	전	1,071	328	윤*주	인천시 서구 건지로 ***				
74	“	633-2	입	496	471	이*나	인천시 서구 완정로**번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75	“	632-1	전	860.1	41	국	국방부				
76	“	633-1	입	298	141	차*련	인천시 연수구 월인재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금곡동	684-34	구	4664.9	320	국	국토교통부				
78	“	634-17	임	63	18	이*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79	“	634-16	임	135	2	이*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80	“	636-12	임	1,207.5	397	국	국방부				
81	“	636-2	임	833.9	581	국	국방부				
82	“	630-8	임	69	10	전주*씨 소성수 파종중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83	“	636-11	임	231.3	143	국	국방부				
84	“	636-1	전	568	328	국	국방부				
85	“	636	전	516.9	290	국	국방부				
86	“	636-10	임	954.3	503	국	국방부				
87	“	630-6	임	398	249	전주*씨 소성수 파종중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				
88	“	637-5	전	886.2	632	국	국방부				
89	“	637	전	858.2	17	국	국방부				
90	“	644-3	임	2,569	2569	국	국방부				
91	“	639	잡	3439.1	4	국	국방부				
92	“	638-1	전	261	47	이*철	인천시 서구 신동길 **	검단농업협동조합 외 3건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93	“	638-3	전	93.9	93.9	국	국방부				
94	“	718	도	290.4	5	국	국토교통부				
95	“	644-1	임	136	136	이*한	-				
96	“	644-4	전	264.7	264.7	국	국방부				
97	“	644	전	2,096	158	국	국방부				
98	“	684-78	구	353.6	5	국	국토교통부				
99	“	645-1	전	86	74	국	국방부				
100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65	구	3,061	1147.3	국	국토교통부				
101	“	21-3	전	2,205	441	국	국방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금곡동	51-13	웬스	메쉬	22.4㎡		㈜*성 자동차 공업사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			
			출입문	메쉬	12.8㎡						
			창고	컨테이너	1EA						
			공장	천막	14.3㎡						
			공장	합석	54.6㎡						
			공장	천막	6.4㎡						
2	“	522-1	출입문	철재	12.4㎡		㈜*우 스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담장	콘크리트블럭	117.0㎡						
			공장	천막	1,187㎡						
3	“	524-1	담장	EGI	106.2㎡		이*숙	인천시 서구 마전동 ***			
			공장	천막	48.3㎡						
4	“	531-5	담장	철재	40.8㎡		윤*영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출입문	EGI	19.2㎡						
			담장	EGI	151.2㎡						
			계근대	철재	1EA						
			사무실	컨테이너	1EA						
			옹벽	콘크리트	144.0㎡						
5	“	531-4	사무실	합석	6.5㎡		윤*영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창고	컨테이너	1EA						
			창고	컨테이너	1EA						
			웬스	메쉬	4.8㎡						
6	“	533-1	출입문	철재	14.0㎡		박*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담장	EGI	90.0㎡						
			창고	조립식	21.7㎡						
			창고	천막	12.8㎡						
			사무실	컨테이너	1EA						
			계근대	철재	1EA						
			창고	천막	91.4㎡						
7	“	603-5	담장	철재	48.0㎡		유*동	인천시 남구 도화동 ***			
			출입문	철재	20.0㎡						
8	“	603-9	담장	메쉬+벽돌	16.0㎡		우중석	인천시 서구 심곡로 ***			
			공장	천막	2.0㎡						
9	“	672-5	출입문	메쉬	9.6㎡		이영주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 **			
			담장	메쉬	28.8㎡						
			담장	EGI	32.4㎡						
			공장	천막	7.3㎡						
			창고	컨테이너	1EA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	“	671-6	출입문	메쉬	16.2㎡		김완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길*			
			담장	철재	68.8㎡						
			창고	컨테이너	1EA						
11	“	670-1	출입문	메쉬	12.8㎡		노홍조	인천시 서구 승학로 ***			
			담장	메쉬	14.4㎡						
			공장	합석	15.04㎡						
12	“	670-5	공장	합석	129.0㎡		고*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13	“	670-3	공장	합석	260.0㎡		고*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14	“	670-4	창고	천막	8.4㎡		이*재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가길 **			
			공장	합석	14.7㎡						
15		660-2	창고	스레트	2.6㎡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화장실	조립식	1.2㎡						
16		670-2	출입문	능형망	10.0㎡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담장	철재	38.4㎡						
			공장	합석	194.2㎡						
			창고	스레트	2.3㎡						
			교목	D0.3	1주						
17		660	창고	천막	13.5㎡		이*학	인천시 서구 금곡동 ***			
18		662	창고	조립식	31.7㎡		이*주	인천시 서구 신동안길 ***			
			교목	D0.5	1주						
19		633-2	견사	철재	15.4㎡		이*나	인천시 서구 환경로**번길*			
			정자	목재	7.8㎡						
			사무실	조립식	35.6㎡						
			창고	농막	4.2㎡						
			사무실	컨테이너	2EA						
			교목	D0.3	2주						
20		638-1	담장	철재	39.1㎡		이*철	인천시 서구 신동길 **			
21		644	가로수	D0.4	58주		국	국방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64호(2020.04.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소로1-323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1-323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2	B	8	8	29	-	-	29	
변경	도로	소로	1	323	10	10	54	-	54	-	564
신설	도로	소로	1	324	10~12	10~12	129	-	129	-	1,44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소로1-323호선 외1개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석남동	203-3	도	355	3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	433-3	구	685	262	국	국토교통부				
3	“	202-12	대	234	18	한*북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 **	인천항 신용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항둔7가 1-51	근저당권	
								삼정필 프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0	근저당권	
4	“	203-12	임	1,174	440	**화학 주식 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5	“	203-13	임	10,841	3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	201-6	전	642	245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	433-20	구	425	2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8	“	201	전	863	339	공	인천광역시 서구				
9	“	산117-12	임	232	91	공	인천광역시 서구				
10	“	433-21	구	34	9	국	기획재정부				
11	“	산117-23	임	66	12	공	인천광역시 서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소로1-323호선 외1개노선 도로개설공사(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203-3	차단기		1EA		**그랑시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	"	203-12	가건물	목조	7.9㎡		**화학 주식 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메쉬 웬스		32m						
			망부석	화강석	1EA						
			가건물	천막	12.8㎡						
3	"	202-12	울타리	능형망	13.6m		*윗상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건물	슬라브	70.8㎡						
4	"	203-13	가건물	목조	18.7㎡		공	인천광역시 서구			
				목조	6.0㎡						
				천막	9.2㎡						
				컨테이너	1동						
5	"	433-20	가건물	컨테이너	1동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	산117-1 2	가건물	조립식판넬	59.1㎡		공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851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 공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20수용0508)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 업 명 :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열람기간 : 2020.05.25. ~ 2020.6.1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열람기간: 2020.05.25. ~ 2020.06.10.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반과, ☎ 032-560-4485)

○ 제출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20.05.25. ~ 2020.06.1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등의 표시
: 별지 참조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수리 불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0 - 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가이아샹베르2차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31번길 47(경서동)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32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0년 5월 25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0년 9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